

# 탑석 푸르지오 파크7 입주자모집공고 [정정공고]



- 정정내용①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거주자격 문구가 일부 변경되었으니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정정내용②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지역, 당첨자 선정 순서 문구가 일부 변경되었으니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정정내용③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중 2순위 문구가 일부 변경되었으니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 5p (변경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 외 청약은 불가함.)

## ■ 입주자모집공고 6p (변경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 입주자모집공고 13p (변경전)

|             |                                                                                                                                                                                                                          |
|-------------|--------------------------------------------------------------------------------------------------------------------------------------------------------------------------------------------------------------------------|
| 당첨자<br>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br>■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정부시 및 경기도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50%)<br>※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발생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 거주자로 우선하며 선정하며, 낙첨자가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음 |
|-------------|--------------------------------------------------------------------------------------------------------------------------------------------------------------------------------------------------------------------------|

## ■ 입주자모집공고 14p (변경후)

|             |                                                                                                                                                                                                                                           |
|-------------|-------------------------------------------------------------------------------------------------------------------------------------------------------------------------------------------------------------------------------------------|
| 당첨자<br>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br>■ ①지역 : 해당 시·도 거주자(의정부시 및 경기도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50%)<br>※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발생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 거주자로 우선하며 선정하며, 낙첨자가 기타지역에서 다시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음 |
|-------------|-------------------------------------------------------------------------------------------------------------------------------------------------------------------------------------------------------------------------------------------|

## ■ 입주자모집공고 15p (변경전)

| 순위  | 내용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 입주자모집공고 16p (변경후)

| 순위  | 내용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8.25.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88-0230

| 주택유형  |  | 해당지역           |  | 기타지역                       |  | 규제지역여부 |  |      |  |
|-------|--|----------------|--|----------------------------|--|--------|--|------|--|
| 민영    |  | 경기도 의정부시 거주자   |  |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 비규제지역  |  |      |  |
| 재당첨제한 |  | 전매제한           |  | 거주의무기간                     |  | 분양가상한제 |  | 택지유형 |  |
| 없음    |  | 1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없음                         |  | 미적용    |  | 민간택지 |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5.08.25.(월) | 25.09.04.(목) | 25.09.05.(금) | 25.09.08.(월) | 25.09.12.(금) | 25.09.15.(월)~<br>25.09.20.(토) | 25.09.23.(화)~<br>25.09.25.(목) |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최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가입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 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br>(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5/park7/>)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 가능**  
\* 중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10년 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 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유형        | 공동<br>인증서 | 금융<br>인증서 | 네이버<br>인증서 | KB국민<br>인증서 | 토스<br>인증서 | 신한<br>인증서 | 카카오<br>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0         |           | 0          |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 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2025.06.3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8.25.(월)**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의정부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5.09.04.(목)                                                                                                | 25.09.05.(금)                                                                                                | 25.09.08.(월)                                                     | 25.09.12.(금)                                                                                | 25.09.15.(월)~<br>25.09.20.(토) | 25.09.23.(화)~<br>25.09.25.(목) |
|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견본주택<br/>(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11-6)</li> </ul>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 접수 불가)

※ 청약 신청 취소는 청약 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 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 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지역, 비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의정부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2025.09.12.) |      |

※ 본 아파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과 - 26227호(2025.08.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67-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7층, 7개동 총 935세대

[특별공급 467세대(기관추천 89세대, 다자녀가구 78세대, 신혼부부 200세대, 노부모부양 29세대, 생애최초 7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주택<br>구분 | 주택<br>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br>(전용<br>면적) | 약식<br>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공용<br>면적<br>(지하주차<br>장등) | 계약<br>면적 | 세대별<br>대지지분 | 총<br>공급<br>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br>공급<br>세대수 | 최하층<br>우선<br>배정<br>세대수 |
|----------|------------|----|-------------------|----------|----------------|----------------|----------|----------------------------|----------|-------------|----------------|----------|-----------|----------|-----------|----------|-----|-----------------|------------------------|
|          |            |    |                   |          | 주거<br>전용<br>면적 | 주거<br>공용<br>면적 | 소계       |                            |          |             |                | 기관<br>추천 | 다자녀<br>가구 | 신혼<br>부부 | 노부모<br>부양 | 생애<br>최초 | 계   |                 |                        |
| 민영<br>주택 | 2025000357 | 01 | 059.8249A         | 59A      | 59.8249        | 18.7526        | 78.5775  | 41.7308                    | 120.3083 | 31.2675     | 197            | 19       | 20        | 43       | 5         | 16       | 103 | 94              | 9                      |
|          |            | 02 | 084.5913A         | 84A      | 84.5913        | 24.7627        | 109.3540 | 59.0065                    | 168.3605 | 44.2117     | 212            | 21       | 20        | 46       | 7         | 16       | 110 | 102             | 8                      |
|          |            | 03 | 084.8193B         | 84B      | 84.8193        | 25.3043        | 110.1236 | 59.1656                    | 169.2891 | 44.2085     | 127            | 12       | 8         | 27       | 4         | 10       | 61  | 66              | 5                      |
|          |            | 04 | 084.5817C         | 84C      | 84.5817        | 25.1714        | 109.7531 | 58.9998                    | 168.7530 | 44.3309     | 27             | 2        | 2         | 4        | 1         | 2        | 11  | 16              | 1                      |
|          |            | 05 | 084.6212D         | 84D      | 84.6212        | 24.6233        | 109.2445 | 59.0274                    | 168.2719 | 44.2067     | 104            | 10       | 8         | 21       | 3         | 9        | 51  | 53              | 4                      |
|          |            | 06 | 084.9731E         | 84E      | 84.9731        | 24.7791        | 109.7522 | 59.2728                    | 169.0251 | 44.2273     | 99             | 9        | 6         | 22       | 3         | 6        | 46  | 53              | 4                      |
|          |            | 07 | 084.9801F         | 84F      | 84.9801        | 24.8653        | 109.8454 | 59.2777                    | 169.1231 | 44.4113     | 50             | 5        | 4         | 11       | 2         | 4        | 26  | 24              | 2                      |
|          |            | 08 | 084.9886G         | 84G      | 84.9886        | 25.0483        | 110.0369 | 59.2837                    | 169.3206 | 44.4149     | 104            | 10       | 8         | 23       | 3         | 7        | 51  | 53              | 4                      |
|          |            | 09 | 084.5851H         | 84H      | 84.5851        | 24.6764        | 109.2615 | 59.0022                    | 168.2636 | 44.4194     | 15             | 1        | 2         | 3        | 1         | 1        | 8   | 7               | 1                      |
|          | 합계         |    |                   |          |                |                |          |                            |          |             | 935            | 89       | 78        | 200      | 29        | 71       | 467 | 468             | 38                     |

•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는 총 공급 세대(935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부 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분양 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약식<br>표기 | 동 구분<br>(라인)                                        | 층 구분   | 해당<br>세대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5%)    |                | 중도금(60%)   |            |            |            |            |            | 잔금(35%)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차 (10%)   | 2차 (10%)   | 3차 (10%)   | 4차 (10%)   | 5차 (10%)   | 6차 (10%)   | 입주<br>지정일   |
|          |                                                     |        |           |             |             |             | 계약 시       | 계약 후<br>30일 이내 | 2026.04.20 | 2026.10.20 | 2027.04.20 | 2028.02.18 | 2028.06.20 | 2028.10.20 |             |
| 59A      | 105동 1~3호<br>106동 1~4호<br>107동 3~4호                 | 1층     | 9         | 229,526,600 | 259,073,400 | 488,600,000 | 10,000,000 | 14,430,000     | 48,860,000 | 48,860,000 | 48,860,000 | 48,860,000 | 48,860,000 | 48,860,000 | 171,010,000 |
|          |                                                     | 2층     | 9         | 234,585,100 | 259,214,900 | 493,800,000 | 10,000,000 | 14,690,000     | 49,380,000 | 49,380,000 | 49,380,000 | 49,380,000 | 49,380,000 | 49,380,000 | 172,830,000 |
|          |                                                     | 3층     | 9         | 239,643,700 | 259,256,300 | 498,900,000 | 10,000,000 | 14,945,000     | 49,890,000 | 49,890,000 | 49,890,000 | 49,890,000 | 49,890,000 | 49,890,000 | 174,615,000 |
|          |                                                     | 4층     | 9         | 244,655,000 | 259,445,000 | 504,100,000 | 10,000,000 | 15,205,000     | 50,410,000 | 50,410,000 | 50,410,000 | 50,410,000 | 50,410,000 | 50,410,000 | 176,435,000 |
|          |                                                     | 5~9층   | 45        | 249,713,500 | 259,486,500 | 509,200,000 | 10,000,000 | 15,460,000     | 50,920,000 | 50,920,000 | 50,920,000 | 50,920,000 | 50,920,000 | 50,920,000 | 178,220,000 |
|          |                                                     | 10~19층 | 88        | 252,266,400 | 262,133,600 | 514,400,000 | 10,000,000 | 15,720,000     | 51,440,000 | 51,440,000 | 51,440,000 | 51,440,000 | 51,440,000 | 51,440,000 | 180,040,000 |
|          |                                                     | 20층 이상 | 28        | 254,772,100 | 264,727,900 | 519,500,000 | 10,000,000 | 15,975,000     | 51,950,000 | 51,950,000 | 51,950,000 | 51,950,000 | 51,950,000 | 51,950,000 | 181,825,000 |
| 84A      | 101동 4~5호<br>102동 4~5호<br>103동 4~5호<br>104동 4~5호    | 1층     | 7         | 325,922,400 | 369,377,600 | 695,300,000 | 10,000,000 | 24,765,000     | 69,530,000 | 69,530,000 | 69,530,000 | 69,530,000 | 69,530,000 | 69,530,000 | 243,355,000 |
|          |                                                     | 2층     | 8         | 333,070,500 | 369,529,500 | 702,600,000 | 10,000,000 | 25,130,000     | 70,260,000 | 70,260,000 | 70,260,000 | 70,260,000 | 70,260,000 | 70,260,000 | 245,910,000 |
|          |                                                     | 3층     | 8         | 340,267,500 | 369,632,500 | 709,900,000 | 10,000,000 | 25,495,000     | 70,990,000 | 70,990,000 | 70,990,000 | 70,990,000 | 70,990,000 | 70,990,000 | 248,465,000 |
|          |                                                     | 4층     | 8         | 347,415,600 | 369,884,400 | 717,300,000 | 10,000,000 | 25,865,000     | 71,730,000 | 71,730,000 | 71,730,000 | 71,730,000 | 71,730,000 | 71,730,000 | 251,055,000 |
|          |                                                     | 5~9층   | 40        | 354,563,600 | 370,036,400 | 724,600,000 | 10,000,000 | 26,230,000     | 72,460,000 | 72,460,000 | 72,460,000 | 72,460,000 | 72,460,000 | 72,460,000 | 253,610,000 |
|          |                                                     | 10~19층 | 80        | 358,137,600 | 373,762,400 | 731,900,000 | 10,000,000 | 26,595,000     | 73,190,000 | 73,190,000 | 73,190,000 | 73,190,000 | 73,190,000 | 73,190,000 | 256,165,000 |
|          |                                                     | 20층 이상 | 61        | 361,760,600 | 377,439,400 | 739,200,000 | 10,000,000 | 26,960,000     | 73,920,000 | 73,920,000 | 73,920,000 | 73,920,000 | 73,920,000 | 73,920,000 | 258,720,000 |
| 84B      | 102동 3호<br>103동 3호<br>104동 3호<br>105동 4호<br>107동 1호 | 1층     | 4         | 324,943,200 | 369,656,800 | 694,600,000 | 10,000,000 | 24,730,000     | 69,460,000 | 69,460,000 | 69,460,000 | 69,460,000 | 69,460,000 | 69,460,000 | 243,110,000 |
|          |                                                     | 2층     | 5         | 332,091,300 | 369,808,700 | 701,900,000 | 10,000,000 | 25,095,000     | 70,190,000 | 70,190,000 | 70,190,000 | 70,190,000 | 70,190,000 | 70,190,000 | 245,665,000 |
|          |                                                     | 3층     | 5         | 339,239,400 | 369,960,600 | 709,200,000 | 10,000,000 | 25,460,000     | 70,920,000 | 70,920,000 | 70,920,000 | 70,920,000 | 70,920,000 | 70,920,000 | 248,220,000 |
|          |                                                     | 4층     | 5         | 346,338,500 | 370,161,500 | 716,500,000 | 10,000,000 | 25,825,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71,650,000 | 250,775,000 |
|          |                                                     | 5~9층   | 25        | 353,486,500 | 370,313,500 | 723,800,000 | 10,000,000 | 26,190,000     | 72,380,000 | 72,380,000 | 72,380,000 | 72,380,000 | 72,380,000 | 72,380,000 | 253,330,000 |
|          |                                                     | 10~19층 | 50        | 357,060,500 | 374,039,500 | 731,100,000 | 10,000,000 | 26,555,000     | 73,110,000 | 73,110,000 | 73,110,000 | 73,110,000 | 73,110,000 | 73,110,000 | 255,885,000 |
|          |                                                     | 20층 이상 | 33        | 360,634,500 | 377,865,500 | 738,500,000 | 10,000,000 | 26,925,000     | 73,850,000 | 73,850,000 | 73,850,000 | 73,850,000 | 73,850,000 | 73,850,000 | 258,475,000 |
| 84C      | 101동 3호                                             | 1층     | 1         | 325,481,800 | 369,518,200 | 695,000,000 | 10,000,000 | 24,750,000     | 69,500,000 | 69,500,000 | 69,500,000 | 69,500,000 | 69,500,000 | 69,500,000 | 243,250,000 |
|          |                                                     | 2층     | 1         | 332,629,900 | 369,770,100 | 702,400,000 | 10,000,000 | 25,120,000     | 70,240,000 | 70,240,000 | 70,240,000 | 70,240,000 | 70,240,000 | 70,240,000 | 245,840,000 |
|          |                                                     | 3층     | 1         | 339,777,900 | 369,922,100 | 709,700,000 | 10,000,000 | 25,485,000     | 70,970,000 | 70,970,000 | 70,970,000 | 70,970,000 | 70,970,000 | 70,970,000 | 248,395,000 |
|          |                                                     | 4층     | 1         | 346,926,000 | 370,074,000 | 717,000,000 | 10,000,000 | 25,850,000     | 71,700,000 | 71,700,000 | 71,700,000 | 71,700,000 | 71,700,000 | 71,700,000 | 250,950,000 |
|          |                                                     | 5~9층   | 5         | 354,074,000 | 370,226,000 | 724,300,000 | 10,000,000 | 26,215,000     | 72,430,000 | 72,430,000 | 72,430,000 | 72,430,000 | 72,430,000 | 72,430,000 | 253,505,000 |
|          |                                                     | 10~19층 | 10        | 357,648,000 | 373,952,000 | 731,600,000 | 10,000,000 | 26,580,000     | 73,160,000 | 73,160,000 | 73,160,000 | 73,160,000 | 73,160,000 | 73,160,000 | 256,060,000 |
|          |                                                     | 20층 이상 | 8         | 361,222,100 | 377,677,900 | 738,900,000 | 10,000,000 | 26,945,000     | 73,890,000 | 73,890,000 | 73,890,000 | 73,890,000 | 73,890,000 | 73,890,000 | 258,615,000 |
| 84D      | 101동 1호<br>102동 1호<br>103동 1호<br>104동 1호            | 1층     | 2         | 322,348,400 | 370,851,600 | 693,200,000 | 10,000,000 | 24,660,000     | 69,320,000 | 69,320,000 | 69,320,000 | 69,320,000 | 69,320,000 | 69,320,000 | 242,620,000 |
|          |                                                     | 2층     | 4         | 329,447,500 | 371,052,500 | 700,500,000 | 10,000,000 | 25,025,000     | 70,050,000 | 70,050,000 | 70,050,000 | 70,050,000 | 70,050,000 | 70,050,000 | 245,175,000 |
|          |                                                     | 3층     | 4         | 336,497,600 | 371,302,400 | 707,800,000 | 10,000,000 | 25,390,000     | 70,780,000 | 70,780,000 | 70,780,000 | 70,780,000 | 70,780,000 | 70,780,000 | 247,730,000 |
|          |                                                     | 4층     | 4         | 343,596,700 | 371,503,300 | 715,100,000 | 10,000,000 | 25,755,000     | 71,510,000 | 71,510,000 | 71,510,000 | 71,510,000 | 71,510,000 | 71,510,000 | 250,285,000 |
|          |                                                     | 5~9층   | 20        | 350,695,900 | 371,704,100 | 722,400,000 | 10,000,000 | 26,120,000     | 72,240,000 | 72,240,000 | 72,240,000 | 72,240,000 | 72,240,000 | 72,240,000 | 252,840,000 |
|          |                                                     | 10~19층 | 40        | 354,220,900 | 375,479,100 | 729,700,000 | 10,000,000 | 26,485,000     | 72,970,000 | 72,970,000 | 72,970,000 | 72,970,000 | 72,970,000 | 72,970,000 | 255,395,000 |
|          |                                                     | 20층이상  | 30        | 357,745,900 | 379,254,100 | 737,000,000 | 10,000,000 | 26,85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257,950,000 |

| 약식<br>표기 | 동 구분<br>(라인)                             | 층 구분   | 해당<br>세대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5%)    |                | 중도금(60%)   |            |            |            |            |            | 잔금(35%)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차 (10%)   | 2차 (10%)   | 3차 (10%)   | 4차 (10%)   | 5차 (10%)   | 6차 (10%)   | 입주<br>지정일   |
|          |                                          |        |           |             |             |             | 계약 시       | 계약 후<br>30일 이내 | 2026.04.20 | 2026.10.20 | 2027.04.20 | 2028.02.18 | 2028.06.20 | 2028.10.20 |             |
| 84E      | 101동 6호<br>102동 6호<br>103동 6호<br>104동 6호 | 1층     | 2         | 322,201,500 | 363,098,500 | 685,300,000 | 10,000,000 | 24,265,000     | 68,530,000 | 68,530,000 | 68,530,000 | 68,530,000 | 68,530,000 | 68,530,000 | 239,855,000 |
|          |                                          | 2층     | 4         | 329,300,600 | 363,199,400 | 692,500,000 | 10,000,000 | 24,625,000     | 69,250,000 | 69,250,000 | 69,250,000 | 69,250,000 | 69,250,000 | 69,250,000 | 242,375,000 |
|          |                                          | 3층     | 4         | 336,350,800 | 363,449,200 | 699,800,000 | 10,000,000 | 24,990,000     | 69,980,000 | 69,980,000 | 69,980,000 | 69,980,000 | 69,980,000 | 69,980,000 | 244,930,000 |
|          |                                          | 4층     | 4         | 343,449,800 | 363,550,200 | 707,000,000 | 10,000,000 | 25,350,000     | 70,700,000 | 70,700,000 | 70,700,000 | 70,700,000 | 70,700,000 | 70,700,000 | 247,450,000 |
|          |                                          | 5~9층   | 20        | 350,548,900 | 363,651,100 | 714,200,000 | 10,000,000 | 25,710,000     | 71,420,000 | 71,420,000 | 71,420,000 | 71,420,000 | 71,420,000 | 71,420,000 | 249,970,000 |
|          |                                          | 10~19층 | 40        | 354,074,000 | 367,326,000 | 721,400,000 | 10,000,000 | 26,070,000     | 72,140,000 | 72,140,000 | 72,140,000 | 72,140,000 | 72,140,000 | 72,140,000 | 252,490,000 |
|          |                                          | 20층 이상 | 25        | 357,599,100 | 371,000,900 | 728,600,000 | 10,000,000 | 26,430,000     | 72,860,000 | 72,860,000 | 72,860,000 | 72,860,000 | 72,860,000 | 72,860,000 | 255,010,000 |
| 84F      | 105동 5호<br>107동 2호                       | 1층     | 2         | 320,879,600 | 363,620,400 | 684,500,000 | 10,000,000 | 24,225,000     | 68,450,000 | 68,450,000 | 68,450,000 | 68,450,000 | 68,450,000 | 68,450,000 | 239,575,000 |
|          |                                          | 2층     | 2         | 327,929,700 | 363,770,300 | 691,700,000 | 10,000,000 | 24,585,000     | 69,170,000 | 69,170,000 | 69,170,000 | 69,170,000 | 69,170,000 | 69,170,000 | 242,095,000 |
|          |                                          | 3층     | 2         | 334,979,900 | 363,920,100 | 698,900,000 | 10,000,000 | 24,945,000     | 69,890,000 | 69,890,000 | 69,890,000 | 69,890,000 | 69,890,000 | 69,890,000 | 244,615,000 |
|          |                                          | 4층     | 2         | 342,030,000 | 364,070,000 | 706,100,000 | 10,000,000 | 25,305,000     | 70,610,000 | 70,610,000 | 70,610,000 | 70,610,000 | 70,610,000 | 70,610,000 | 247,135,000 |
|          |                                          | 5~9층   | 10        | 349,080,100 | 364,219,900 | 713,300,000 | 10,000,000 | 25,665,000     | 71,330,000 | 71,330,000 | 71,330,000 | 71,330,000 | 71,330,000 | 71,330,000 | 249,655,000 |
|          |                                          | 10~19층 | 20        | 352,605,200 | 367,994,800 | 720,600,000 | 10,000,000 | 26,030,000     | 72,060,000 | 72,060,000 | 72,060,000 | 72,060,000 | 72,060,000 | 72,060,000 | 252,210,000 |
|          |                                          | 20층 이상 | 12        | 356,130,300 | 371,669,700 | 727,800,000 | 10,000,000 | 26,390,000     | 72,780,000 | 72,780,000 | 72,780,000 | 72,780,000 | 72,780,000 | 72,780,000 | 254,730,000 |
| 84G      | 101동 2호<br>102동 2호<br>103동 2호<br>104동 2호 | 1층     | 2         | 323,033,800 | 370,966,200 | 694,000,000 | 10,000,000 | 24,7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242,900,000 |
|          |                                          | 2층     | 4         | 330,132,900 | 371,167,100 | 701,300,000 | 10,000,000 | 25,065,000     | 70,130,000 | 70,130,000 | 70,130,000 | 70,130,000 | 70,130,000 | 70,130,000 | 245,455,000 |
|          |                                          | 3층     | 4         | 337,232,000 | 371,468,000 | 708,700,000 | 10,000,000 | 25,435,000     | 70,870,000 | 70,870,000 | 70,870,000 | 70,870,000 | 70,870,000 | 70,870,000 | 248,045,000 |
|          |                                          | 4층     | 4         | 344,331,100 | 371,668,900 | 716,000,000 | 10,000,000 | 25,800,000     | 71,600,000 | 71,600,000 | 71,600,000 | 71,600,000 | 71,600,000 | 71,600,000 | 250,600,000 |
|          |                                          | 5~9층   | 20        | 351,430,200 | 371,869,800 | 723,300,000 | 10,000,000 | 26,165,000     | 72,330,000 | 72,330,000 | 72,330,000 | 72,330,000 | 72,330,000 | 72,330,000 | 253,155,000 |
|          |                                          | 10~19층 | 40        | 355,004,200 | 375,595,800 | 730,600,000 | 10,000,000 | 26,530,000     | 73,060,000 | 73,060,000 | 73,060,000 | 73,060,000 | 73,060,000 | 73,060,000 | 255,710,000 |
|          |                                          | 20층 이상 | 30        | 358,529,300 | 379,370,700 | 737,900,000 | 10,000,000 | 26,895,000     | 73,790,000 | 73,790,000 | 73,790,000 | 73,790,000 | 73,790,000 | 73,790,000 | 258,265,000 |
| 84H      | 105동 6호                                  | 1층     | 1         | 322,397,300 | 365,402,700 | 687,800,000 | 10,000,000 | 24,390,000     | 68,780,000 | 68,780,000 | 68,780,000 | 68,780,000 | 68,780,000 | 68,780,000 | 240,730,000 |
|          |                                          | 2층     | 1         | 329,496,400 | 365,503,600 | 695,000,000 | 10,000,000 | 24,750,000     | 69,500,000 | 69,500,000 | 69,500,000 | 69,500,000 | 69,500,000 | 69,500,000 | 243,250,000 |
|          |                                          | 3층     | 1         | 336,546,600 | 365,653,400 | 702,200,000 | 10,000,000 | 25,110,000     | 70,220,000 | 70,220,000 | 70,220,000 | 70,220,000 | 70,220,000 | 70,220,000 | 245,770,000 |
|          |                                          | 4층     | 1         | 343,645,700 | 365,854,300 | 709,500,000 | 10,000,000 | 25,475,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70,950,000 | 248,325,000 |
|          |                                          | 5~9층   | 5         | 350,744,800 | 365,955,200 | 716,700,000 | 10,000,000 | 25,835,000     | 71,670,000 | 71,670,000 | 71,670,000 | 71,670,000 | 71,670,000 | 71,670,000 | 250,845,000 |
|          |                                          | 10~15층 | 6         | 354,269,800 | 369,730,200 | 724,000,000 | 10,000,000 | 26,200,000     | 72,400,000 | 72,400,000 | 72,400,000 | 72,400,000 | 72,400,000 | 72,400,000 | 253,400,000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 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사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 059.8249A | 084.5913A | 084.8193B | 084.5817C | 084.6212D | 084.9731E | 084.9801F | 084.9886G | 084.5851H |
|---------------|-----------|-----------|-----------|-----------|-----------|-----------|-----------|-----------|-----------|
| 약식표기          | 59A       | 84A       | 84B       | 84C       | 84D       | 84E       | 84F       | 84G       | 84H       |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여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당해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포함 기준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시점이라 하고 중도금은 기준시점을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지 않음)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며, 다만 동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해야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 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 정리 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감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동주택시설의 대지 지분을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증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청약 및 계약 시에는 반드시 단지 내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분양사무실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사업지 주변현황(개발현황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 등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기본 선택 품목 전체 또는 일부의 시공 제외를 개별적으로 요청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분양가 조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2025.06.27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LTV 및 DSR 등의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 구분 (약식표기)     |                        | 59A   | 84A | 84B | 84C | 84D | 84E | 84F | 84G | 84H | 합계  |
|---------------|------------------------|-------|-----|-----|-----|-----|-----|-----|-----|-----|-----|
| 기관추천<br>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4     | 4   | 2   | 1   | 2   | 2   | 1   | 2   | -   | 18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3     | 2   | 1   | 1   | 1   | -   | 1   | 1   | -   | 10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3     | 4   | 2   | -   | 2   | 1   | 1   | 2   | -   | 15  |
|               | 중소기업 근로자               | 3     | 4   | 2   | -   | 2   | 2   | -   | 2   | -   | 15  |
|               | 장애인                    | 경기도   | 3   | 3   | 2   | -   | 1   | 2   | 1   | 1   | 15  |
|               |                        | 서울특별시 | 2   | 2   | 2   | -   | 1   | 1   | -   | -   | 9   |
|               |                        | 인천광역시 | 1   | 2   | 1   | -   | 1   | 1   | -   | -   | 7   |
| 다자녀가구<br>특별공급 | 의정부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10    | 10  | 4   | 1   | 4   | 3   | 2   | 4   | 1   | 39  |
|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10    | 10  | 4   | 1   | 4   | 3   | 2   | 4   | 1   | 39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43    | 46  | 27  | 4   | 21  | 22  | 11  | 23  | 3   | 200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5     | 7   | 4   | 1   | 3   | 3   | 2   | 3   | 1   | 29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16    | 16  | 10  | 2   | 9   | 6   | 4   | 7   | 1   | 71  |
| 합계            |                        | 103   | 110 | 61  | 11  | 51  | 46  | 26  | 51  | 8   | 467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br>(배우자의<br>혼인 전<br>이력 배제) | 신혼부부<br>생애최초<br>신생아(공공)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 가능                                                                                                                                                                                                            | - 적용횟수 제한 없음                                                                                                                        |
|                                | 생애최초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br>(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 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 가능                                                                                                                                                                                             |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제3항<br>(출산특례)                  | 다자녀가구<br>신혼부부<br>노부모부양<br>신생아(공공) |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p> |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p> |

|  |  |                                                                                                                                                                                                                                                                                                                                                                                                    |                                                                                                 |
|--|--|----------------------------------------------------------------------------------------------------------------------------------------------------------------------------------------------------------------------------------------------------------------------------------------------------------------------------------------------------------------------------------------------------|-------------------------------------------------------------------------------------------------|
|  |  | <p><b>* 기존주택 처분 조건</b>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 신청자의 <b>부동산가액 산정</b> 시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 <p>용 불가</p> <p>-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 <b>외의 세대원</b>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 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 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구분    | 내용                                                                                                                                                                                                                                                                                                                                                             |                    |                                                                                                |
|-------|----------------------------------------------------------------------------------------------------------------------------------------------------------------------------------------------------------------------------------------------------------------------------------------------------------------------------------------------------------------|--------------------|------------------------------------------------------------------------------------------------|
| 공급기준  |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                    |                                                                                                |
|       | 구분                                                                                                                                                                                                                                                                                                                                                             |                    | 처리방법                                                                                           |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br>※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 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       |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무주택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                    |                                                                                                |
|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                    |                                                                                                |

|              | <p>(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 무주택세대주 요건</p>                                                                                                                                                                                                                                                                                                                                                                                                                                                                                                                                                                                                                                                                                                                                                                                                                                                                                                                                                                                                                                                                                                                                                              |          |                   |          |                   |             |       |       |       |              |       |       |       |              |         |       |       |      |         |         |       |
|--------------|-----------------------------------------------------------------------------------------------------------------------------------------------------------------------------------------------------------------------------------------------------------------------------------------------------------------------------------------------------------------------------------------------------------------------------------------------------------------------------------------------------------------------------------------------------------------------------------------------------------------------------------------------------------------------------------------------------------------------------------------------------------------------------------------------------------------------------------------------------------------------------------------------------------------------------------------------------------------------------------------------------------------------------------------------------------------------------------------------------------------------------------------------------------------------------------------------------------------------------------------------------------------------------------------|----------|-------------------|----------|-------------------|-------------|-------|-------|-------|--------------|-------|-------|-------|--------------|---------|-------|-------|------|---------|---------|-------|
| 청약통장<br>자격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 <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합니다.</p>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2-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9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
| 추천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경기북부 보훈지청 복지과</li> <li>■ 장애인 :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li>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li> </ul>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

**2-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8세대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대상자         | <div>■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div> <div>-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div> <div>■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div> <div>- 자녀는 민법 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div> <div>■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div>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br>선정방법 | <div>■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div> <div>■ ①지역 : 해당 시·도 거주자(의정부시 및 경기도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50%)</div> <div>※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발생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 거주자로 우선하며 선정하며, 낙첨자가 기타지역에서 다시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음</div> <div>■ ②배점</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배점항목</th><th>총배점</th><th>배점기준</th><th>비고</th></tr><tr><td colspan="4"></td></tr></table>                                                                                                                                                                                                                                            |      |    |  | 배점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  |
| 배점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             | 점수 |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4명 이상          | 4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3명             | 35 |                                                                                                                                                                                                                                                                                                    |
|                                                                                                                                                                                                                                           |     | 2명             | 25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2명             | 10 |                                                                                                                                                                                                                                                                                                    |
|                                                                                                                                                                                                                                           |     |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                                                                                                                                                                                                                                           |     | 한부모 가족         | 5  |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br>- 청약 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청약 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합니다.<br>*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봅니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br>*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br>(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서로 확인<br>(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br>(3), (4)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br>(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                |    |                                                                                                                                                                                                                                                                                                    |

2-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200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r>■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          | <div>■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div> <div>■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div>■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div> <div>■ ①소득구분</div> <table><thead><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2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10%)</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2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5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body></table> <div>※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div> <div>※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div> <div>※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의정부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div> <div>■ ②순위</div> <table><thead><tr><th>순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tbody></table> <div>■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정부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div>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3단계 | 우선공급 (2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4단계 | 일반공급 (1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순위 | 내용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우선공급 (2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일반공급 (1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순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div>■ 자녀기준</div> <div>-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div> <div>*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div> <div>-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합니다.</div> <div>-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 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 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div> <div>-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div> <div>-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div> <div>*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5.08.25.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br>우선공급,<br>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br>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205,312원                | ~8,578,088원                 | ~9,031,048원                 | ~9,733,086원                 | ~10,435,124원                | ~11,137,162원                |
|                      | 부부 모두<br>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br>120% 이하     | ~8,646,374원                | ~10,293,706원                | ~10,837,258원                | ~11,679,703원                | ~12,522,149원                | ~13,364,594원                |
| 신생아<br>일반공급,<br>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br>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br>140% 이하     | 7,205,313원~<br>10,087,437원 | 8,578,089원~<br>12,009,323원  | 9,031,049원~<br>12,643,467원  | 9,733,087원~<br>13,626,320원  | 10,435,125원~<br>14,609,174원 | 11,137,163원~<br>15,592,027원 |
|                      | 부부 모두<br>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br>160% 이하     | 8,646,375원~<br>11,528,499원 | 10,293,707원~<br>13,724,941원 | 10,837,259원~<br>14,449,677원 | 11,679,704원~<br>15,572,938원 | 12,522,150원~<br>16,696,198원 | 13,364,595원~<br>17,819,459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br>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0,087,438원~               | 12,009,324원~                | 12,643,468원~                | 13,626,321원~                | 14,609,175원~                | 15,592,028원~                |
|                      | 부부 모두<br>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 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원<br>이하 | 건축물    | <div><div>-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div><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div>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 토지   | <div><div>-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div><div><div>*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div><div>*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div><div>*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div><div>*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div></div><div>-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div></div> |                 |        |                                                                                                                                                                                                                                                                                                                                                                                 |               |  |            |    |                    |               |      |                                  |      |  |                 |

2-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9세대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정부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점 산정기준 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r><td rowspan="4">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4">32</td><td>만 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table> |      |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 3명             | 20 |                 |    |  |
|  | ③입주자저축<br>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                                                          |                |    |                 |    |  |
|  |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    |                 |    |  |
|  |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    |                 |    |  |
|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                |    |                 |    |  |
|  | 비고                                                                   |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                 |    |  |
|  |                                                                      |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    |                 |    |  |
|  |                                                                      |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                 |    |  |

2-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71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p> <p>-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p> <p>※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p>■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p> <p>-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p> |

|             | <div><div>- 나. 1인 가구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div><div><div>*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됩니다.</div><div>*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div><div>*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div></div><div><div>■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div><div>■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div><div><div>*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합니다.</div><div>**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div></div></div></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br>선정방법 | <div><div>■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div><div>■ ①소득구분</div><table><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 (30%)</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able><div><div>※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div><div>■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정부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div></div></div>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5단계 | 추첨공급 (30%)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추첨공급 (30%)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div><div>■ 자녀기준</div><div><div>-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div><div><div>*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div><div>*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div><div>*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div></div></div><div><div>■ 소득기준</div><div><div>- 소득 확인 시점</div><table><tr><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tr><td>2025.08.25.</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r></table></div></div><div><div>-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div></div></div>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2025.08.25.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5.08.25.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                         | 130% 이하                | ~9,366,906원                | ~11,151,514원                | ~11,740,362원                | ~12,653,012원                | ~13,565,661원                | ~14,478,311원                |
|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                         | 130% 초과<br>160% 이하     | 9,366,907원~<br>11,528,499원 | 11,151,515원~<br>13,724,941원 | 11,740,363원~<br>14,449,677원 | 12,653,013원~<br>15,572,938원 | 13,565,662원~<br>16,696,198원 | 14,478,312원~<br>17,819,459원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br>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1,528,499원               | ~13,724,941원                | ~14,449,677원                | ~15,572,938원                | ~16,696,198원                | ~17,819,459원                |
|                |                         |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 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원<br>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원<br>이하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
|                |                 |     |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
|--|--|--|--|-----------------------------------------------------------------------------------------------------------------------------------------------------------------------------------------------------------------------------------------------------------------------------------------------------------------------------------------|

### 3

####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468세대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br>■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약통장<br>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br>- 1순위<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b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table><tr><th>구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br>※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br>※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합니다. |          |                   |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br>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br>-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br>-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br>-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br>■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정부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br>■ ②가점<br>-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40% | 60% |

-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부양가족수<br>(청약 신청자 본인 제외) | 35   |     | 0명                   | 5  | 4명              | 25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br>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분                | 내용                                                                                                                                                                                                                                                                                                                                                                                                                                                                                                                                                                                                                                                                                                                                                                                                                                                                                                                                       |
|-------------------|------------------------------------------------------------------------------------------------------------------------------------------------------------------------------------------------------------------------------------------------------------------------------------------------------------------------------------------------------------------------------------------------------------------------------------------------------------------------------------------------------------------------------------------------------------------------------------------------------------------------------------------------------------------------------------------------------------------------------------------------------------------------------------------------------------------------------------------------------------------------------------------------------------------------------------------|
| ①무주택기간<br>적용기준    |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p> <p>4)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
| ②부양가족의<br>인정 적용기준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p>- 외국인 직계존속</p> <p>-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p>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p>                                                                                                                                                                                                                                                                                      |

|                                                                                                                                                                                                                                                                                    | <p>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li><li>-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li></ul>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li>-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ul> <p>5)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li>-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li></ul> |                              |    |    |     |             |          |     |               |                             |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p>-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p> <p><b>*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b></p>                                                                                                                                                                                                                                                                                                                                                                                                                                                                                                                                                                                                                                                                                                            |                              |    |    |     |             |          |     |               |                             |     |               |                              |
|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p>                                                                                                                                                                                                                                                                                                                                                                                                                                                                                                                                                                                                                                                                                                                             |                              |    |    |     |             |          |     |               |                             |     |               |                              |
|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p>                                                                                                                                                                                                                    |                                                                                                                                                                                                                                                                                                                                                                                                                                                                                                                                                                                                                                                                                                                                                                                                                                          |                              |    |    |     |             |          |     |               |                             |     |               |                              |
| <table><tr><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tr><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tr><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tr><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table> |                                                                                                                                                                                                                                                                                                                                                                                                                                                                                                                                                                                                                                                                                                                                                                                                                                          | 단계                           | 비율 | 내용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단계                                                                                                                                                                                                                                                                                 | 비율                                                                                                                                                                                                                                                                                                                                                                                                                                                                                                                                                                                                                                                                                                                                                                                                                                       | 내용                           |    |    |     |             |          |     |               |                             |     |               |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    |     |             |          |     |               |                             |     |               |                              |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    |     |             |          |     |               |                             |     |               |                              |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     |             |          |     |               |                             |     |               |                              |
|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li></ul> <p><b>*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b></p>                                                                        |                                                                                                                                                                                                                                                                                                                                                                                                                                                                                                                                                                                                                                                                                                                                                                                                                                          |                              |    |    |     |             |          |     |               |                             |     |               |                              |
| 비고                                                                                                                                                                                                                                                                                 |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li><li>-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li></ul>                                                                                                                                                                                                                                                                                                                                                                                                                                                                                                                                                                            |                              |    |    |     |             |          |     |               |                             |     |               |                              |
|                                                                                                                                                                                                                                                                                    | <p>■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li><li>-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li><li>-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li><li>-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li><li>-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ul>                                                                                                                                                                                      |                              |    |    |     |             |          |     |               |                             |     |               |                              |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구분                             | 내용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br>기준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li> </ol> </li> </o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p>                                                                                                                                                                                                                                                                                                                                                                                                                                                                                                                                                                                                                                                                                                                                                                                                                                                                                                                                                                                                                                                                                                                                                                                                                                                                                                                                                                                                                                                                                                                                                        |
| 주택을<br>소유하지<br>않은 것으로<br>보는 경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o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li> </ol> </li> <li>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li> <li>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li> <li>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li> <li>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li> <li>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li> <li>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li> </ol> </li> </ol> </li> </ol>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4

## 청약 신청 및 당첨자발표 안내

###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 신청일시                                                                      | 신청장소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
| 특별<br>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br>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2025.09.04.(목)<br>(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br>(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견본주택 접수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11-6<br>☎1688-0230 | · 일시 : 2025.09.12.(금)<br>· 확인방법<b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br>개별조회 |
| 일반<br>공급 | 1순위                                   | 해당지역 : 의정부시 거주자 | 2025.09.05.(금) 09:00~17:30                                                | ·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br>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br>후 조회 가능                       |
|          | 2순위                                   | 기타지역 : 수도권 거주자  | 2025.09.08.(월) 09:00~17:30                                                |                                                                                                                               |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청약 신청 방법 및 절차 (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 신청 완료
- 청약 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 (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 청약 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 신청 취소 완료
- 청약 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 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 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 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 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방법 및 절차 (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 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구분                             | 필요서류                                                                                                                                                                                                                                                                                                                                                                                             |                                                                                                                                                                                                                                                                         |
|--------------------------------|--------------------------------------------------------------------------------------------------------------------------------------------------------------------------------------------------------------------------------------------------------------------------------------------------------------------------------------------------------------------------------------------------|-------------------------------------------------------------------------------------------------------------------------------------------------------------------------------------------------------------------------------------------------------------------------|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                                                                                                                                                                                                                                                                         |
| 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서류<br>(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마이데이터<br>(‘청약도움e’)<br>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 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이용방법 : 청약 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                                                                                                                                                                                                                                                                                                                                                                                                                                                                                                                   |
| 공고단지<br>청약연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 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                                                                                                                                                                                                                                                                                                                                                                                                                                                                                                                   |
| 당첨자발표<br>서비스              | 청약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5.09.12.(금) ~ 2025.09.21.(일) (10일간)</li> <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 (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
|                           | 문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2025.09.12.(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b>당첨자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 2023.04.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9항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대상자의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결과를 반드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가점제 당첨자의 가점 점수에 오류가 있어 점수가 낮아진 경우, 재산정한 점수가 최저가점보다 높다면 당첨자격은 유효하나,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 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 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5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안내

| 구분   | 서류 제출 기간                                                                                                                                                                                                                                                                                                                                                                                                                                                                                                                                                                                                                                                                                                                                                                                                                                                                                                                                                                                                                                                                                                                                                                                                                                                                                                                                                                                                                                                                                                                                                                  | 대상자                                           | 접수 장소                           |
|------|---------------------------------------------------------------------------------------------------------------------------------------------------------------------------------------------------------------------------------------------------------------------------------------------------------------------------------------------------------------------------------------------------------------------------------------------------------------------------------------------------------------------------------------------------------------------------------------------------------------------------------------------------------------------------------------------------------------------------------------------------------------------------------------------------------------------------------------------------------------------------------------------------------------------------------------------------------------------------------------------------------------------------------------------------------------------------------------------------------------------------------------------------------------------------------------------------------------------------------------------------------------------------------------------------------------------------------------------------------------------------------------------------------------------------------------------------------------------------------------------------------------------------------------------------------------------------|-----------------------------------------------|---------------------------------|
| 내용   | 2025.09.15.(월) ~ 2025.09.20.(토) 10:00~16:00                                                                                                                                                                                                                                                                                                                                                                                                                                                                                                                                                                                                                                                                                                                                                                                                                                                                                                                                                                                                                                                                                                                                                                                                                                                                                                                                                                                                                                                                                                                               |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br>(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 당사 견본주택<br>(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11-6)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br/>※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li> <li>• 당첨자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li> <li>•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li> <li>•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li> <li>•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li> <li>•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li>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li> <li>•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li> </ul> |                                               |                                 |

### ■ <표1>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특별공급<br>공통서류 | ○    |             | ① 특별공급 신청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 비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제출)</li> <li>•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 ○    |             | ② 서약서 및 확약서             | 본인           | • 건본주택에 비치                                                                                                                                                                                                                                                                                                  |
|                     | ○    |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본인           | • 건본주택에 비치                                                                                                                                                                                                                                                                                                  |
|                     | ○    |             | ④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br>※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 ○    |             | ⑤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⑥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                     | ○    |             | ⑦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⑧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                     | ○    |             | ⑩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br>※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br>※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                     | ○    |             | ⑪ 복무확인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br>•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br>※ 군 복무 기간을 명시                                                                                                                                                                      |
|                     | ○    |             | ⑫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배우자          |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br>•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⑬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 본인 또는<br>세대원 |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br>※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br>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br>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                     | ○    |             | ⑭ 청약통장 순위(가입)<br>확인서    | 본인           |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청약홈에서 발급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 제출)<br>•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해외<br>근무자<br>(단신부임) | ○    |             | ①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br>입증서류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 날인)<br>•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br>•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li> <li>※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li> </ul>                                                                   |
|                   |      | ○           | ②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li> <li>※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li> </ul>                          |
|                   | ○    |             |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 체류 유무 확인</li> <li>※ 발급기간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li> </ul>                    |
| 기관추천<br>특별공급      |      | ○           | ①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 본인          |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li> </ul>                                                                                             |
| 다자녀<br>가구<br>특별공급 | ○    |             | ①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li> <li>•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li> </ul>                                                                                  |
|                   |      | ○           | ④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           | ⑦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을 위한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 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⑧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li>• 자녀 :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li> </ul>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      |             |                            |                            | 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⑩ 기존주택 처분 관련<br>서약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li> <li>• 견본주택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li> </ul>                                                                       |
| 신혼부부<br>특별공급 | ○    |             | ①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등)</li> </ul>                                                                                                                                                                     |
|              | ○    |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br>또는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li> <li>•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li> <li>•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li> </ul>                       |
|              |      | ○           | ④ 임신진단서 또는<br>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br/>(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ul>                                                                           |
|              |      | ○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br>확인각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 비치</li> </ul>                                                                                                                                                                                           |
|              |      | ○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br>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
|              |      | ○           | ⑦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              | ○    |             | ⑧ 소득증빙 서류<br>(<표2> 참고)     | 본인 및<br>만 19세<br>이상<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br/>※ 단,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              | ○    |             |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br>만 19세<br>이상<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br/>(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li> </ul>                                                                                 |
|              |      | ○           | ⑩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br>만 19세<br>이상<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li> </ul>                                                                                                                                                                       |
|              |      | ○           | ⑪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본인 및<br>만 19세<br>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대상자 중 전년도부터 무소득자로 무소득 임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li> </ul>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      |             |                         | 세대원         |                                                                                                                                                                                                                                                                                                               |
|                   |      | ○           | ⑫ 부동산 소유현황<br>(<표4> 참고) | 본인 및<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li>(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li>※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li> </ul> |
|                   |      | ○           | ⑬ 기존주택 처분 관련<br>서약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li> <li>견본주택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li> </ul>                                                                                                                                  |
| 노부모<br>부양<br>특별공급 | ○    |             | ① 청약 가점점수<br>산정기준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본주택에 비치</li> </ul>                                                                                                                                                                                                                                                    |
|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 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                   | ○    |             | ④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li> <li>-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li> <li>※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li> </ul>                                                               |
|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필수 제출</li> </ul>                                                                                                                                                                                                                |
|                   |      | ○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br>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 만 30세 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li>자녀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                   |      | ○           |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li> <li>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li> <li>-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                   |      | ○           | ⑧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br>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li> <li>※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                   |      | ○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br>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li> <li>-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ul>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      |             |                            |                            |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br>※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 ○           | ⑩ 기존주택 처분 관련<br>서약서        | 본인                         |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br>• 견본주택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 ○    |             | ⑪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br>내역         | 피부양<br>직계존속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 ○           | ⑫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br>내역         | 피부양<br>직계비속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생애최초<br>특별공급 | ○    |             | ①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등)                                                                                                                                                                   |
|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br>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br>•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              |      | ○           | ⑥ 임신진단서 또는<br>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br>(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 ⑦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br>확인각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⑧ 입양관계증명서 또는<br>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             | ⑨ 소득증빙 서류<br>(<표2> 참고)     | 본인 및<br>만 19세<br>이상<br>세대원 |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br>※ 단,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⑩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br>만 19세<br>이상<br>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br>(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              |      | ○           | ⑪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br>만 19세              |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      |             |                           | 이상<br>세대원                  |                                                                                                                                                                                                                                               |
|                            |      | ○           | ⑫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본인 및<br>만 19세<br>이상<br>세대원 |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대상자 중 전년도부터 무소득자로 무소득 임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                                                                                                                                                                                            |
|                            | ○    |             | ⑬ 소득세납부 입증서류<br>(<표3> 참고) | 본인                         | •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br>※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                            |      | ○           | ⑭ 부동산 소유현황<br>(<표4> 참고)   | 본인 및<br>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건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
| 제3자<br>대리인<br>신청 시<br>추가사항 | ○    |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②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
|                            | ○    |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br>※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부적격<br>통보를<br>받은 자         |      | ○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br>자료      | 해당 주택                      |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br>•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br>•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br>하는 서류  | 본인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br>※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하, 같음)<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br>※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br>※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① 해당 직장<br>② 해당 직장, 세무서         |
|                    | 금년도 신규 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br>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직인 날인)<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 ①, ② 해당 직장                      |
|                    | 전년도 전직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br>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 ①, ② 해당 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br>② 계속적인 근로자(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 ① 해당 직장<br>② 세무서, 홈택스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br>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 ①, ② 세무서, 홈택스                   |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br>※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br>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분)<br>-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br>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국민연금공단,<br>②, ③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직인 날인)<br>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 (직인 날인)<br>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br>※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②, ⑤ 해당 직장<br>③ 세무서<br>④ 등기소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직인 날인)<br>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br>※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② 세무서, 해당 직장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직인 날인)<br>※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세무서, 해당 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행정복지센터                        |
| 무직자                |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전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br>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① 건본주택에 비치<br>② 세무서             |

|                                    |                                                                                                                 |                                  |
|------------------------------------|-----------------------------------------------------------------------------------------------------------------|----------------------------------|
| 농업인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 행정복지센터                         |
| 기타<br>(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br>육아휴직 세대 한함) |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br>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① 거주지 관할 구역<br>고용센터 등<br>② 해당 직장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인해 전년도 소득관련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으며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 중 당첨자에 한하여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br>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 세무서<br>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br>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br>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br>※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br>※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 제출<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소득세 납부<br>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br>(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br>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br>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br>①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br>※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 제출<br>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br>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 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br>②, ③ 해당직장, 세무서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 제출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 발급처                                             |
|-------------------|-----------|---------------------------------------------------------------------------------------------------------------------------------------------|-------------------------------------------------|
| 부동산소유현황이<br>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br>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br>(www.iros.go.kr)<br>③ 행정복지센터 |
|                   | 해당자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①, ② 행정복지센터                                     |

|                   |           |                                                                                                                                                                                                                                    |                                                        |
|-------------------|-----------|------------------------------------------------------------------------------------------------------------------------------------------------------------------------------------------------------------------------------------|--------------------------------------------------------|
|                   |           |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br>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br>(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br>(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③ 서울시이택스<br>(etax.seoul.go.kr)<br>위택스(www.wetax.go.kr) |
|                   | 추가<br>해당자 |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br>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 행정복지센터<br>② 지자체 축산과<br>③ 토지이음<br>(www.eum.go.kr)     |
| 부동산소유현황이<br>없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br>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br>※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br>(www.iros.go.kr)<br>② 행정복지센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천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 ▣ <표5>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일반공급<br>공통서류 | ○    |             | ① 서약서 및 확약서             | 본인   | • 건본주택에 비치                                                                                                                             |
|              |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본인   | • 건본주택에 비치                                                                                                                             |
|              | ○    |             | ③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br>※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 ○    |             | ④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⑤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              | ○    |             | ⑥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⑦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              | ○    |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                                                                   |
|              |      | ○           | ⑩ 복무확인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br>•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br>※ 군 복무 기간을 명시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      | ○           | ⑪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li> <li>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                 |      | ○           | ⑫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li> <li>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li> </ul>                                                                                                                                                                                                                                               |
|                 |      | ○           | ⑬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 본인 또는<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li> <li>※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li> <li>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li> <li>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 계산서 등의 사본</li> </ul> |
| 해외근무자<br>(단신부임) | ○    |             | ①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br>입증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직인 날인)</li> <li>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li> <li>※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li> </ul>      |
|                 |      | ○           | ② 비자발급내역 및<br>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li> <li>※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li> </ul>                                                                                                                                                                          |
|                 | ○    |             |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세대원 및<br>미성년자<br>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 체류 유무 확인</li> <li>※ 발급기간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li> </ul>                                                                                                                                                                    |
| 가점제             | ○    |             | ① 청약 가점점수<br>산정기준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본주택에 비치</li> </ul>                                                                                                                                                                                                                                                                                                                     |
|                 |      | ○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br>(전체포함)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li>※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li> </ul>                                                                                                                                                                                                                                                                                             |
|                 |      | ○           | 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li> <li>-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li> </ul>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      |             |                         |             | 양가족에서 제외<br>※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 ○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br>직계비속 |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                         |      | ○           | ⑦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br>직계비속 |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⑧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br>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br>직계비속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br>-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br>※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 ○           | ⑩ 청약통장 순위(가입)<br>확인서    | 배우자         | •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br>-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br>(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 ○           | ⑪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br>-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      | ○           | ⑫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br>내역      | 피부양<br>직계존속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 ○           | 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br>내역      | 피부양<br>직계비속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제3자<br>대리인 신청<br>시 추가사항 | ○    |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②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br>※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부적격<br>통보를<br>받은 자      |      | ○           | ① 해당 주택에 대한<br>소명 자료    | 해당 주택       |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br>•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br>•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br>인정하는 서류 | 본인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6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구분        | 계약 체결 기간                                             | 계약 체결 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5.09.23.(화) ~ 2025.09.25.(목) 3일간<br>10:00 ~ 16:00 | 탐석 푸르지오 파크7 견본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11-6) |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 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당첨 효력 상실)
-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1차 계약금          | 우리은행           | 1005-104-812144 | (주)대우건설 |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         |

- 분양대금 중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201호 계약자 → '1011201홍길동')
- 분양대금 중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계약체결 시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가상계좌로 입금된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모계좌(우리은행 1005-104-812144 (주)대우건설)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공통<br>서류            |      | ○           | 자격검증서류                  | -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추가 개별 통지 서류             | -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                     | ○    |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                     | ○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                     | ○    |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
|                     | ○    |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br>(인지세 납부) | -     | • 공급계약,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납부<br>•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 방법 및 금액<br>- 구매방법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a href="https://www.e-revenuestamp.or.kr">https://www.e-revenuestamp.or.kr</a> )에 접속, 구매 및 출력<br>- 구매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부적격<br>통보를<br>받은 경우 |      | ○           | 무주택 소명서류                | 해당 주택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br>•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br>•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br>•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
|---------------------|---|---|--------------------|-----|------------------------------------------------------------------|
|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대리인<br>신청 시<br>추가사항 | ○ |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                     | ○ |   | 위임장                | 본인  |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
|                     | ○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재외 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8.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비서류의 제출은 계약체결 이전 건본주택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 기간 내에 소명을 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한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 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 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도급 증서'(계약서 1통마다 납부)로서 과세 대상이며 계약 체결 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 시 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 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아파트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 구분    | 인지세 납부 안내                                                                                                                                                 |                 |                 |                |                |         |
|-------|-----------------------------------------------------------------------------------------------------------------------------------------------------------|-----------------|-----------------|----------------|----------------|---------|
| 대상 증서 |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계약서,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                 |                |                |         |
| 납부 기한 | -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                 |                 |                |                |         |
| 납부 방법 |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br>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                 |                |                |         |
| 납부 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납부세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임을 증명하는 경우엔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사업주체 비치)” 작성을 통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사업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원할 시, 주택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대출 신청일정 등 세부계획은 금융기관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이자후불제 조건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선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 개시일 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변경된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 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합니다. 이 때 2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금리적용기준 차이로 총 발생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 불가 등) 또는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해야 하며 대출 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이 완납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니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는 대출 은행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 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 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 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세대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 구분(타입) | 59A        | 84A        | 84B        | 84C        | 84D        | 84E        | 84F        | 84G        | 84H        |
|--------|------------|------------|------------|------------|------------|------------|------------|------------|------------|
| 공급금액   | 20,000,000 | 28,500,000 | 27,800,000 | 28,000,000 | 28,000,000 | 29,500,000 | 28,000,000 | 25,800,000 | 28,500,000 |

##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금액은 분양주택 발코니 확장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부분적인 확장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이후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샤시,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형 드레스룸/현관창고/팬트리 가구(타입별 상이), 확장부위 마감 연장, 거실 아트월 대형타일, 거실 우물천장 확대비용, 전동빨래건 조대, 시스템 에어컨 2개소(거실, 침실1) 설치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품질(타사제품 포함)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샷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환기구, 급배수관, 에어컨 매립배관,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천정은 천정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 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 및 확장 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 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안내 및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 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 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 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온도조절기, 전기/통신분전반 등의 설치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환기부족, 생활환경 등으로 결로 및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 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실 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우천 시 비확장 발코니 내부에 물고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에는 바닥배수구가 설치됨)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 및 바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추가 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8

## 추가 선택품목

- 평면선택 및 추가 선택품목(현관중문, 벽/바닥 마감재 특화, 조명 특화, 주방 스타일링 특화, 주방 특화, 욕실 특화, 드레스룸 특화, 현관 수납 특화, 붙박이장,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은 시공사인 (주)대우건설과 고객 간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온도조절기,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기본형(무상)안은 발코니 확장 기준입니다.

### 1. 라이프업 스타일링(유상)

#### ① 현관중문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 선택항목 | 선택형          |                   | 금액           | 비고 |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59A                                             | 현관중문 | 미설치          | 원슬라이딩 자동중문 + 시트판넬 | 1,750,000    |    |
| 84A, 84B,<br>84C, 84D,<br>84E, 84F,<br>84G, 84H |      |              |                   | 1,600,000    |    |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센서 및 스위치의 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중문 후면 벽은 시트판넬 마감이 되고 기본형(무상-1안) 선택 시 벽지로 마감됩니다.
- 59A타입은 현관중문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중문 후면 및 옆면 벽으로 시트판넬 마감이 연장되며, 기본형(무상-1안) 선택 시 벽지로 마감됩니다.
- 현관중문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시트판넬 마감부위는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안내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도어 프레임 및 유리의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등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공간상의 이유로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 화재감지기, 조명기구의 배치 및 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벽/바닥 마감재 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 품목          | 선택형                        |                                                                           | 금액           | 비고 |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59A | 벽/바닥 마감재 특화 | 1. 전 실 강마루(섬유판)<br>2. 실크벽지 | 1. 전 실 광폭 강마루(섬유판)<br>2. 복도 1면/소파뒷벽 시트판넬<br>+ 복도 1면 간접조명<br>3. 흡착벽지(천장제외) | 2,850,000    |    |
| 84A |             |                            |                                                                           | 3,800,000    |    |
| 84B |             |                            |                                                                           | 3,800,000    |    |
| 84C |             |                            |                                                                           | 3,950,000    |    |
| 84D |             |                            |                                                                           | 3,700,000    |    |
| 84E |             |                            |                                                                           | 3,950,000    |    |
| 84F |             |                            |                                                                           | 4,100,000    |    |
| 84G |             |                            |                                                                           | 4,400,000    |    |
| 84H |             |                            |                                                                           | 3,800,000    |    |

- 본 공사 시 강마루(섬유판) 및 광폭 강마루(섬유판)의 제조사 및 규격, 사양, 시공패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흡착벽지는 도배지가 시공되는 벽 부분에 해당되며, 천장은 제외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타입 및 평면 옵션에 따라 시공 부위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복도 1면 및 소파뒷벽의 시트판넬은 설치되지 않으며, 벽지로 마감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복도 1면에 설치되는 간접조명 및 등박스의 규격 및 상세, 형태, 이격거리는 본 공사 시 마감품질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자재와 동등 이상으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조명 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 품목    | 선택형                             |                                                  | 금액           | 비고 |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59A | 조명 특화 | 기본조명기구(거실, 침실)<br>+ 스마트 스위치 일반형 | 특화조명기구(거실, 침실)<br>+ 거실, 침실 감성조명<br>+ 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 1,550,000    |    |
| 84A |       |                                 |                                                  | 1,590,000    |    |
| 84B |       |                                 |                                                  | 1,590,000    |    |
| 84C |       |                                 |                                                  | 1,590,000    |    |
| 84D |       |                                 |                                                  | 1,590,000    |    |
| 84E |       |                                 |                                                  | 1,800,000    |    |
| 84F |       |                                 |                                                  | 1,800,000    |    |
| 84G |       |                                 |                                                  | 1,590,000    |    |
| 84H |       |                                 |                                                  | 1,590,000    |    |

- 조명 특화옵션 선택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 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사양, 설치수량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조명 특화옵션 선택 시 거실과 침실조명의 하부면을 비추는 직하 부분만 감성디밍(디밍/색온도 조절)이 제공됩니다.
- 현관/복도/쇼파 뒷벽 간접등과 거실보조등은 감성디밍(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침실 조명 특화 선택 시에만 디밍과 색온도 제어가 가능한 플터치 고급형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미선택 시 조명ON/OFF 기능만 가능한 일반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 스마트스위치의 설치 위치에 따라 스마트스위치의 기능 및 형태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카달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안내되어 있는 일반형 스마트스위치의 POP 이미지는 샘플 이미지이며, 공간 및 조명 회로에 따라 버튼 수량은 상이합니다.
- 고급형 스마트스위치(침실) 음성인식기능은 마이크와의 거리 및 방향에 따라 음성인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명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주방 스마트스위치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될 수 있습니다.

## 2. 라이프업 수납(유상)

### ① 현관 수납 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 품목       | 선택형                                                                |                                                                                  | 금액           | 비고 |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59A | 현관 수납 특화 | 1. 현관입구 : 벽지<br>2. 기본 신발장                                          | 1. 현관입구 : 시트판넬 + 은경판넬<br>2. 신발장 특화 : 신발살균기 + 디자인 선반(조명포함)                        | 1,100,000    |    |
| 84A |          | 1. 현관입구 : 벽지<br>2. 기본 신발장<br>3. 현관창고 : 가구도어 (여닫이도어)<br>+ 풀대형 시스템선반 | 1. 현관입구: 시트판넬<br>2. 신발장 특화 : 신발살균기 + 디자인선반(조명포함)<br>3. 현관창고 특화 : 폴딩도어 + 시스템선반 특화 | 1,400,000    |    |
| 84B |          |                                                                    |                                                                                  | 1,300,000    |    |
| 84C |          |                                                                    |                                                                                  | 1,300,000    |    |
| 84D |          |                                                                    |                                                                                  | 1,500,000    |    |
| 84E |          |                                                                    |                                                                                  | 1,200,000    |    |
| 84F |          |                                                                    |                                                                                  | 1,200,000    |    |
| 84G |          |                                                                    |                                                                                  | 1,400,000    |    |
| 84H |          |                                                                    |                                                                                  | 1,400,000    |    |

- 현관 수납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현관 창고도어와 시스템선반 형태가 상이하며, 현관입구 시트판넬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발 살균기 및 디자인선반(조명 포함)은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현관 가구 조명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신발장 상단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신발 살균기 및 조명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은경판넬(59A타입)과 시트판넬(전타입)은 옵션 미선택 시 삭제되며, 벽지로 마감됩니다.

### ② 드레스룸 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 품목      | 선택형                             |                                     | 금액           | 비고 |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59A | 드레스룸 특화 | 파우더장 + 가구도어(여닫이)<br>+ 폴대형 시스템선반 | 포켓도어 +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br>+ 천장형 제습기 | 3,800,000    |    |
| 84A |         |                                 |                                     | 4,500,000    |    |
| 84B |         |                                 |                                     | 4,200,000    |    |
| 84C |         |                                 |                                     | 4,250,000    |    |
| 84D |         |                                 |                                     | 4,200,000    |    |
| 84E |         |                                 |                                     | 3,700,000    |    |
| 84F |         |                                 |                                     | 3,700,000    |    |
| 84G |         |                                 |                                     | 3,600,000    |    |
| 84H |         |                                 |                                     | 4,500,000    |    |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파우더장 및 드레스룸(가구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은 확장 시에만 제공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는 도배지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포켓도어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디자인 시스템선반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가 포함됩니다.(가야/KY-1005P)
- 드레스룸 특화 미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는 별도 유상 선택 가능합니다. (빌트인 가전 옵션 : 천장형 제습기)
- 드레스룸 특화 및 천장형 제습기 선택여부에 따라 조명기구, 환기 디퓨저,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의 스펙, 위치, 수량,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은 조명기구 유지보수를 위해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미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 선택항목                       | 선택형          |                          | 금액      | 비고 |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 전 타입 | 천장형 제습기<br>(드레스룸 특화 미선택 시) | 미설치          | 천장형 제습기<br>(가야/KY-1005P) | 830,000 |    |

- 각 타입별 드레스룸 특화 옵션(유상-2안) 선택 시에는 천장형 제습기 설치가 포함되어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드레스룸 특화 옵션(유상-2안) 미선택 시 개별 선택이 가능합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 옵션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붙박이장 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 품목              | 선택형          |                       | 금액           | 비고 |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59A                          | 침실3 붙박이장        | 미설치          | 침실3 붙박이장(폴딩도어)        | 850,000      |    |
| 84A, 84B, 84C, 84D, 84F, 84H | 침실2, 3 매립형 붙박이장 |              | 침실2, 3 매립형 붙박이장(폴딩도어) | 2,150,000    |    |
| 84E                          | 침실2 붙박이장        |              | 침실2 붙박이장(폴딩도어)        | 900,000      |    |
| 84G                          | 침실2 붙박이장        |              | 침실2 붙박이장(폴딩도어)        | 1,350,000    |    |
|                              | 침실3 붙박이장        |              | 침실3 붙박이장(폴딩도어)        | 900,000      |    |

- 침실2, 3 매립형 붙박이장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침실2 및 침실3 가로폭 사이즈가 축소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붙박이장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의 크기 및 위치는 각 평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규격, 상세,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 배선기구, 전자식 스위치, 환기 디퓨저 등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④ 침실3 드레스룸 특화(84E)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 품목       | 선택형          |                            | 금액           | 비고 |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84E | 침실3 드레스룸 | 가구도어(여닫이도어)  | 가구도어(여닫이도어)<br>+ 폴대형 시스템선반 | 300,000      |    |

- 침실3 드레스룸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폴대형 시스템선반이 설치되며, 옵션 미선택 시에는 별도의 선반이 설치되지 않으며, 벽지로 마감됩니다.
- 침실3 드레스룸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설치되는 폴대형 시스템선반은 유리조명선반 및 서랍 등이 제공되지 않으며, 벽지로 마감됩니다.

## 3. 라이프업 키친(유상)

### ① 주방 스타일링 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 품목         | 선택형                                                                |                                                                                              | 금액           | 비고 |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59A | 주방 스타일링 특화 | 1. 벽 : 국산 타일 (300*600),<br>상판 : 인조대리석<br>2. 싱크수전: 국산<br>3. 기본 조명기구 | 1. 벽/상판 : 세라믹 타일<br>2. 싱크수전 : 외산<br>3. 특화조명기구<br>(주방 슬림라인+상부장 하부조명)<br>4. 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 3,800,000    |    |
| 84A |            |                                                                    |                                                                                              | 3,800,000    |    |
| 84B |            |                                                                    |                                                                                              | 4,100,000    |    |
| 84C |            |                                                                    |                                                                                              | 4,200,000    |    |
| 84D |            |                                                                    |                                                                                              | 3,900,000    |    |
| 84E |            |                                                                    |                                                                                              | 3,800,000    |    |
| 84F |            |                                                                    |                                                                                              | 3,700,000    |    |
| 84G |            |                                                                    |                                                                                              | 4,200,000    |    |
| 84H |            |                                                                    |                                                                                              | 3,800,000    |    |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의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세라믹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디자인 패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팝업 콘센트의 설치 유무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콘센트 본체 및 전선이 하부장에 노출되며 하부장 수납공간이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절수기일체형싱크수전 (진명홈바스 / JMK 7200WS) 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외산 싱크수전은 한스그로헤 (#72800) 제품이 설치되며, 별도의 싱크 절수기가 설치됩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특화조명기구의 형태 및 수량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 및 스위치는 가구 시공성 향상 및 전기/설비 간섭구간으로 인해 본 공사 시 규격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길이가 상이합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은 유지보수를 위해 상부에 점검구가 추가됩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설치되는 특화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마감품질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커버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마트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에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이프업 스타일링 조명 특화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일반형/고급형)변경이 가능합니다.
- AI음성인식 주방TV의 경우 각 세대별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제어 및 음성인식이 가능하며(소비자가 별도 구축) 홈네트워크 연동(문열림, 세대현관 및 공동현관 확인 등)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 주방TV 등 관련 전기시설이 설치되거나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주방TV 제품 설치 시 제품 작동에 필요한 전기/통신 선들이 제품 후면에 노출됩니다.

## ② 주방 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 품목    | 선택형          |                                                                                              | 금액           | 비고                            |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59A | 주방 특화 | 기본형 주방       | 1. 평면옵선 : 아일랜드 상부장식장 + 가구판넬<br>2. 주방 스타일링 특화                                                 | 5,000,000    | 장식장/가구판넬<br>위치 및 규격<br>평면별 상이 |
| 84A |       |              | 1. 평면옵선 : 장식장 + 가구판넬<br>+ 복도팬트리 특화 (폴딩도어+시스템선반 특화)<br>+ 주방팬트리 특화 (시스템선반 특화)<br>2. 주방 스타일링 특화 | 8,100,000    |                               |
| 84H |       |              |                                                                                              | 8,000,000    |                               |
| 84B |       |              |                                                                                              | 7,800,000    |                               |
| 84C |       |              | 1. 평면옵선 : 장식장 + 가구판넬<br>+ 복도팬트리 특화 (폴딩도어+시스템선반 특화)<br>2. 주방 스타일링 특화                          | 8,200,000    | 장식장/가구판넬<br>위치 및 규격<br>평면별 상이 |
| 84D |       |              |                                                                                              | 7,700,000    |                               |
| 84E |       |              |                                                                                              | 8,200,000    |                               |
| 84F |       |              | 1. 평면옵선 : 복도팬트리 특화 (폴딩도어+시스템선반 특화)<br>2. 주방 스타일링 특화                                          | 4,000,000    |                               |
| 84G |       |              | 1. 평면옵선 : 아일랜드 상부장식장 + 가구판넬<br>+ 복도팬트리 특화 (폴딩도어+시스템선반 특화)<br>2. 주방 스타일링 특화                   | 6,200,000    |                               |

- 주방 특화 옵션의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세라믹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디자인 패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판넬의 위치 및 규격은 타입 및 옵션 선택에 따라 상이하하며, 옵션 미선택 시 도배로 마감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아일랜드 상부장식장 및 장식장이 설치되는 타입은 설치위치 및 규격이 평면별로 상이하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무상-1안) 선택 시 주방 및 복도팬트리는 기본 폴대형 시스템선반이 설치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팝업 콘센트의 설치 유무는 타입별로 상이하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콘센트 본체 및 전선이 하부장에 노출되며 하부장 수납공간이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절수기일체형싱크수전(진명홈바스 / JMK 7200WS) 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외산 싱크수전은 한스그로헤(#72800) 제품이 설치되며, 별도의 싱크 절수기가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특화조명기구의 형태 및 수량은 타입별로 상이하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은 가구 시공성 향상 및 전기/설비 간섭구간으로 인해 본 공사 시 규격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길이가 상이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은 유지보수를 위해 상부에 점검구가 추가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설치되는 특화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마감품질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커버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마트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선에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이프업 스타일링 조명 특화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일반형/고급형)변경이 가능합니다.
- AI음성인식 주방TV의 경우 각 세대별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제어 및 음성인식이 가능하며(소비자가 별도 구축) 홈네트워크 연동(문열림, 세대현관 및 공동현관 확인 등)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③ 주방 냉장고장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 품목      | 선택형           |                        | 금액                          | 비고        |
|----------------------------------------------|---------|---------------|------------------------|-----------------------------|-----------|
|                                              |         | 기본형(무상) - 1안  |                        | 선택형(유상) - 2안                |           |
| 59A                                          | 주방 냉장고장 | 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                        | 비스포크 냉장고 패키지 + 상부장          | 4,800,000 |
| 84A, 84B, 84C,<br>84D, 84E, 84F,<br>84G, 84H |         | 1-1안          | 냉장고 상부장<br>+ 김치냉장고 상부장 | 비스포크 냉장고 패키지 + 상부장<br>+ 키큰장 | 4,900,000 |
|                                              |         | 1-2안          | 냉장고 상부장<br>+ 키큰장       |                             |           |

- 주방 냉장고장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이 변경되며, 형태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 패키지는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로 구성되며, 삼성전자 제품(RR40C7(8/9)95AP, RZ34C7(8/9)65AP, RQ34C7(8/9)45AP)으로 설치됩니다. (도어 좌우 변경에 따라 모델명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비스포크 냉장고 패키지의 패널은 글라스 재질로 마감되며, 59A : 새틴화이트, 84A/B/C/D/E/F/G/H : 새틴베이지 색상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 패키지의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84A/B/C/D/E/F/G/H타입의 선택형(유상-2안) 비스포크 냉장고 패키지 선택 시 설치되는 키큰장의 가구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콘센트 설치 수량이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옵션 계약기간 경과 시 84A/B/C/D/E/F/G/H은 기본형(1-1안)인 냉장고 상부장 + 김치냉장고 상부장으로 설치됩니다.

4. 라이프업 바스(유상)

① 욕실 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 품목    | 선택형                                                                                                              |                                                                                                                                                        | 금액           | 비고 |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59A                                          | 욕실 특화 | 1. 벽 : 타일 (300*600),<br>바닥 : 타일 (300*300)<br>2. 국산 수전<br>3. 국산 세면대 / 양변기<br>4.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욕실1)<br>5. 전자비데 (욕실2) | 1. 벽 : 유럽산 타일 (600*1,200),<br>바닥 : 유럽산 타일 (300*600)<br>2. 고급형 국산 수전<br>3. 외산 세면대 / 비데일체형 양변기<br>4.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1)<br>5. 욕실 액세서리류 / 샤워부스<br>프레임 컬러특화 | 5,300,000    |    |
| 84A, 84B, 84C,<br>84D, 84E, 84F,<br>84G, 84H |       | 1. 벽 : 타일 (300*600),<br>바닥 : 타일 (300*300)<br>2. 국산 수전<br>3. 국산 세면대 / 양변기<br>4.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욕실2)<br>5. 전자비데 (욕실2) | 1. 벽 : 유럽산 타일 (600*1,200),<br>바닥 : 유럽산 타일 (300*600)<br>2. 고급형 국산 수전<br>3. 외산 세면대 / 비데일체형 양변기<br>4.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2)<br>5. 욕실 액세서리류 / 샤워부스<br>프레임 컬러특화 | 5,400,000    |    |

- 욕실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전자비데는 욕실2 1개소에 설치됩니다.
- 욕실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코너선반의 형태가 사각선반으로 변경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벽/바닥 타일의 나누기 및 상세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등 욕실가구의 제조사, 색상, 규격, 형태 등 상세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의 위치, 크기,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은 타일 마감으로 변경되며 이때 수납공간은 없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특화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수전 및 액세서리는 색상특화(무광니켈) 제품으로, 약품(산성계열)이나 거친 수세미로 청소 시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② 욕실 복합 환풍기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 품목      | 선택형          |                                      | 금액           | 비고     |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59A                                          | 욕실복합환풍기 | 일반형 욕실배기팬    | 욕실복합환풍기<br>(힘펠/FHD3-C150P MT)<br>2개소 | 1,200,000    | 욕실2 설치 |
| 84A, 84B, 84C,<br>84D, 84E, 84F,<br>84G, 84H |         |              | 욕실복합환풍기<br>(힘펠/FHD3-C150P MT)<br>1개소 | 650,000      |        |

- 욕실 복합 환풍기 선택형(유상)-2안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형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선택 시 일반형 욕실배기팬(약 90CMH)이 설치됩니다. 제품은 추후 선정될 예정이며 제조사, 외형, 치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무선리모콘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의 설치위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유상)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 선택형 | 수량 | 제조사  | 위치                | 금액        | 비고          |
|----------------------------------------------|-----|----|------|-------------------|-----------|-------------|
| 59A                                          | 1안  | 2대 | 삼성전자 | 거실, 침실1           | -         | 발코니 확장 시 제공 |
|                                              | 2안  | 4대 |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3,000,000 |             |
| 84A, 84B, 84C,<br>84D, 84E, 84F,<br>84G, 84H | 1안  | 2대 |      | 거실, 침실1           | -         | 발코니 확장 시 제공 |
|                                              | 2안  | 4대 |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3,200,000 |             |

- 발코니 확장 시 실내기 2개소(거실, 침실1)가 무상 제공 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스탠드형 에어컨(거실) 및 벽걸이형 에어컨(침실1) 설치를 고려한 매립형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어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단종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침실1에는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되며 거실에는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옵션품목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침실2, 침실3에는 별도의 선냉매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은 실내기수량에 해당하는 무선리모콘을 제공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 설치제품(판넬 등)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이나,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시스템 청정환기(유상)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 선택형 | 수량 | 제조사  | 위치                | 금액        | 비고 |
|-----|-----|----|------|-------------------|-----------|----|
| 전타입 | 1안  | 2대 | 삼성전자 | 거실, 침실1           | 1,980,000 |    |
|     | 2안  | 4대 |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3,940,000 |    |

- 시스템 청정환기는 선택 옵션에 따른 설치 공간의 면적에 따라 공기 청정화 능력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시스템 청정환기 작동에 따른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환기 디퓨저의 설치 개수, 위치, 그리고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청정환기는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장비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 청정환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청정환기 옵션 선택 시, 각 실 시스템 청정환기 콘센트가 시공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 빌트인 가전(유상)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 구분               | 선택형 | 제조사  | 모델명         | 금액        | 비고 |
|-----|------------------|-----|------|-------------|-----------|----|
| 전타입 | 전기쿡탑<br>(인덕션 3구) | 일반형 | 쿠쿠전자 | CIR-FS301FB | 650,000   |    |
|     |                  | 고급형 | 디트리쉬 | DPI-4320B   | 1,980,000 |    |
|     | 전기오븐             | 일반형 | LG전자 | MZ385EBT1   | 450,000   |    |
|     |                  | 고급형 |      | MZ941CLCAT  | 850,000   |    |
|     | 식기세척기            | 일반형 | LG전자 | DUE5NSE     | 1,100,000 |    |
|     |                  | 고급형 |      | DIE6PT      | 1,400,000 |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전기쿡탑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제조사 : 하츠/SSGC-3605SABH)

- 전기쿡탑 유상옵션 선택 시에는 주방상판에 가스배관용 원형타공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옵션품목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해당 위치에 수납공간이 제공됩니다.
-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은 제품 특성 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상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의 패널은 샤이니퓨어(일반형), 가구도어(고급형)로 마감되며 변경이 불가합니다.
-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가전제품의 추후 시공을 고려한 전기콘센트 및 전기차단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계좌

| 구분   | 계약금  | 잔금   | 납입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납입시기 | 계약 시 | 입주 시 | 계약금  | 우리은행                       | 1005-404-820152 | (주)대우건설 |
| 납입금액 | 10%  | 90%  | 잔금   |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         |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건본주택으로 제출 바랍니다.
- 잔금 납부 :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모계좌 (우리은행, 1005-404-820152, (주)대우건설)로 관리됩니다. 세대별 가상계좌는 공급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금 선납 시 선납에 따른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잔금 납부는 약정일자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더라도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 공사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완납하였더라도, 추가 선택품목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시공사가 추가 선택품목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 시 개별 납부)
- 납부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가전 및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가구 옵션 등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일정, 납부방법, 선택타입,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 단지 여건 사항

#### 1. 단지 외부여건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본 단지가 속한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관련한 인·허가 및 각종 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도시계획시설 관련 인·허가 내용(변경 포함)에 따라 단지 외부 여건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본 아파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가 속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세부내용,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사업주체의 사정에 의해 변경 및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본 아파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본 단지 101동 남서측에는 어린이공원(예정)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2동 동측으로는 도로(중로 2-1호선의 연장)가 개설될 예정이며, 본 단지 주변으로는 경관녹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시 세부 설치 계획은 변경 가능합니다)
- 본 단지가 속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도시계획시설 준공 및 기부채납 후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준공 및 기부채납 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에 있는 공원, 경관녹지, 도로,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조성계획, 세부시설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면적, 폭, 길이, 경사, 레벨, 개소 등이 분양홍보물(모형, CG, 분양안내 및 홈페이지 등)에 표현된 사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아파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존 도로의 교통소음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7동 남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업무시설 부지는 단지 경계선 밖에 위치하고 있어, 단지 내 소유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시설물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인접한 세대는 채광, 조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는 주변 기반/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 및 학군 관련 사항]

- 초등학교는 의정부 용현초, 중학생은 의정부시중학군(단일 학군), 고등학생은 의정부학군 내 배치 예정입니다.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등)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배치계획 변동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단지 내부여건

####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소음, 진동, 분진 등 생활권 관련 주요 고지사항]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수거 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 및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인근 인접한 아파트 단지 배치에 따라 일조, 조망, 채광 등의 침해 및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에 설치됩니다.(1층 필로티인 경우 2층 및 최상층 세대 설치, 1~2층 필로티인 경우 최상층 세대만 설치됨)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한전패드), 전기인입 맨홀 및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 1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 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옥외안테나는 옥상층(101동, 102동, 104동, 107동)에 설치되며, 중계장치는 옥상층(101동, 102동, 104동, 107동) 및 지하 1층 제연휀룸(102-1, 103-1, 104-2, 105-2, 107-1), 지하 2층 제연휀룸(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파측정 후 설치위치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방 파우더 룸에 콘센트 일체형 조명기구와 같은 복합 기구 적용 시, 해당 기구는 일괄 소등 스위치의 동작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공통사항

- 단지 주변의 레벨차이로 인해 주택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경사면 등이 설치되거나 옹벽 및 경사면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간섭,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사업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단차이가 발생하며 본 공사 시 “조경석, 중력식옹벽, 자립식옹벽, 건축벽체노출” 등으로 선택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소음, 악취로 인한 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위성안테나/야간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면부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청에서 도로의 설치 및 유지 보수, 개선 등의 목적으로 공사 등 관련 작업을 추진할 시 입주자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도로 및 인도(도시계획 도로)의 개보수공사 계획 수립과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당해 아파트 부지 내 도로 및 인도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동시에 시행할 경우 입주자 측에서 공사 시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피 분양자, 소유자 또는 세입자, 이해관계자 등은 본 도로(보도 포함)를 대상으로 보상 청구 등 기타 관련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우수 및 오수 처리를 위한 낙차공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 및 경관심의)권고에 따라 본 공사 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공동주택(아파트)은 지하주차장으로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용으로 별도 지하주차장이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통행구간 유효 높이는 지하 1층 택배차량 이동통로 2.7m이며 그 외 차량 이동통로는 2.3m, 지하 2층 및 지하 3층의 차량 이동통로는 2.3m입니다. 주차공간은 전체 2.1m 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238대(공동주택 1,222대, 근린생활시설 16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각종 배관, 배선, 덕트, 가스배관, 소화배관, 에어컨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반과 접하여 지하층이 계획되는 곳은 습기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하는 각 동별로 접근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 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호실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지하 2층에 계획 중인 무인택배시스템은 동별, 라인별로 수량 및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설치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내에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입주민 부담 관리비용(하수도요금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핑 후 메인배수관에 연결됩니다. 이에 따른 입주민 부담 관리비용(하수도요금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동별/층별/위치별 여건에 따른 주요 고지 사항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특히 저층부)는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

- 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도로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차량출입구는 3개소이며, 단지 내에는 차없는 보행자도로이며, 비상차량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사차량, 폐기물 수거차량 등 지상이동 필요)
  -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세대는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에 따라 소음 및 불빛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행자출입구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택배차량은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접근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주차램프, 외부계단, 문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저층세대의 경우 주출입구 인근 외부 엘리베이터, 계단 등으로 환경권, 소음피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탐라이트)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 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기구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장비(냉난방용 실외기, 배기팬 등)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파트 저층부 인접세대에 소음, 분진 악취 및 미관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관소 설치로 인해 소음, 악취, 분진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놀이/휴게/운동시설물 등 기타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어린이공원, 경관녹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그리너리스튜디오, 키즈스테이션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키즈스테이션은 주민공동시설 지하 3층 출입구, 102동 지하1층 차량부출입구 인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보행로, 단지 내·외 도로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1층 필로티내부 및 각 동 전후면 등에 D/A설치로 인해 인근 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진동전달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설치위치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 주/부 출입구 및 외부 엘리베이터(계단) 인근 저층부 세대는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1층 필로티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인근 세대에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의 주문주와 주민입계단의 형태, 디자인, 마감재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지하 1층에는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지하 2층, 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용시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및 배기팬 등이 지하층 및 지상층에 옥외와 옥내에 설치되어 인근 동의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분진, 악취, 미관저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7동 인근에 옥외계단과 옥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엘리베이터 및 계단 이용으로 인해 소음, 진동, 시야가 차단될 수 있으니 자세한 위치는 모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5동 인근에 단지 북측 신도아파트와 단지가 연결되는 부분에 출입구가 설치될 예정이며(설치 위치와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경관녹지 및 단지 내부 산책로와 연결될 예정입니다. 출입구는 인허가 조건으로 인해 필히 설치해야하며, 입주민이 부출입구에 대해 잠금시설 등을 설치하여 외부 출입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서측 경관녹지 보행동선은 101동과 102동 사이 단지 내 보행로와 연결됩니다. 입주민은 외부 출입을 막기 위해 단지 내 출입동선에 외부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해당 위치는 모형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호, 102동 1~4호, 103동 1~3호, 104동 1~3호, 105동, 107동 3,4호 세대는 주동의 형태 및 인근 동의 배치로 인하여 층에 따라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동 1401호, 1501호, 1402호, 1502호, 1602호, 1702호, 1403호, 1503호, 1603호, 1703호, 1404호, 1504호 세대는 내부 일조를 높이기 위해 인근동(104동, 106동, 107동) 상부에 엘리 오스(반사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해당동 상부에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사경을 접하는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 조경/색채/입면 관련 사항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출범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옹벽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구조 상 보강시설물에 따른 점용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외부 시설물의 디자인 및 색채, 마감재, 사인물 설치위치 등은 디자인 및 사용성, 시공성 개선 등의 사유로 분양 이후에 해당 인·허가청 협의를 통하여 디자인 보완 및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분양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일부 주동 측벽에 조명형 사인물, 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동에 인접한 상부층 세대는 빛 공해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고, 설치 개소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층 조경시설 중 일부 시설에 조명 또는 영상장비 설치로 인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빛 공해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건물 옥상의 설비 시설물은 옥상시설과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및 개소, 형태가 변경될 수 있고 옥상구조물 지지를 위한 기둥이 추가 시공될 수 있으며, 옥상구조물 상부는 도장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의 옥상구조물, 파라펫 등의 형태는 공사여건에 따라 해당관청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 부착물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분양당시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고,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상·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입 램프는 본 공사 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식재 및 시설물, 포장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조경수 식재 위치, 마감재료, 형태, 색채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의 녹지,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보행통로, 수목 등은 사용편의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대체시설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웬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데크 형태 및 입면(주차출입구, 커뮤니티 및 근린생활시설 입면, 문주 포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파고라 등 휴게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층으로 자갈 배수층을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자재 등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바랍니다.

-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은 외기에 노출되는 지하 1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면의 조정부분은 조망을 위하여 다른 부분보다 높이를 낮춰 계획되었으며, 추후 우수피해 방지 등을 이유로 조정부분 높이가 변경되거나 차수판 설치 등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주민공동시설/부대복리시설 관련 사항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제공 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 시공 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고,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용검사 전 사용이 불가하며 사업주체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공간은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장 A/S센터(가칭)로 사용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동별 배치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위한 동선 및 접근성이 상이하며,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면적 등은 각 단지별 규모에 따라 각각 계획되었으므로 단지 간 동일한 구성, 면적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 및 내부 바닥에 경사(슬로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안내 및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 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급수, 급탕, 난방, 가스요금 등은 입주민의 공동요금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동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른 단지과 비교 등을 이유로 추가설치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 등의 사양은 각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주민들은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의 사양 등에 대한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A(설비환기구)는 실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 배치에 따른 지하주차장 및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외부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으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천정 속에는 기준층 세대의 각종 배수배관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동 1층에 어린이집이 위치하며, 어린이집용 실외기 및 보일러(연도포함), 주방배기를 위한 설비(배기팬 및 탈취유니트 등)가 설치됩니다. 각종 기계장비의 운전으로 인하여 인근세대 및 인접 동으로 소음 및 진동, 연기, 냄새 등이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7.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예정 안내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935세대로,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

- 업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의정부시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하여,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협약체결 이전까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협약 체결 전까지 입주(예정)자들 으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의정부시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 및 관할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의정부시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 의정부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 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인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인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원 시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리모델링 및 각종 기자재 구입·비치 등 개원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입주 시기와 차이(늦음)가 있습니다.
  -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상기 안내 내용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변경된 법령·지침 등을 우선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8.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예정 안내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935세대로,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55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해당 센터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제로, 초·중·고 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의정부시와 체결할 예정이고,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해당 단지의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의정부시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지역 돌봄수요 등을 고려할 때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해당 센터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의정부시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의정부시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 의정부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인 자녀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인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입주인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소 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는 향후 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센터장))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및 사용료,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상기 안내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변경된 법령·지침 등을 우선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주요 고지 사항]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됩니다.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기준) : 최대 유효 지반가속도 0.204g으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의 Ⅶ에 해당함  
(신 기준) : 내진 I 등급 (참고사항 : 2024.12.17. 등급공개기준이 변경됨)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MD계획이 미확정으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 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0

### 설계 관련 주요 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의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84B/C/D/E/F/G/H: 84A 기준)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일부 세대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천장내부에 유지보수를 위한 상부세대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침실 내 도어 후면 및 벽면 등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유상옵션 및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평면옵션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헤드, 제습기 및 에어컨 실내기, 시스템 청정환기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통신분전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견본주택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에 적용됩니다. (일부 구조에 따라 설치층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아트월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옵션품목)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향후 유리 및 프레임의 사양 및 규격,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라믹타일은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누기 및 패턴, 색상이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인조대리석, 세라믹타일 등의 마감재는 가공 및 생산방식에 따라 견본주택과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84H타입의 팬트리2(주방 팬트리) 가구도어의 마감 및 형태, 규격은 유사타입인 84A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마루(섬유판)의 스템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및 다용도실 도어의 표면재는 도어의 물성 상 목창호 도어/문선과 패턴, 색상, 엠보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창호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인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 옆 다용도실의 천장에는 환기덕트, 가스배관, 소화배관 등이 설치되어 다용도실 천장고에 제한이 있으며, 그 설치 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등)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59A타입의 다용도실 창호 및 보일러 위치는 견본주택 건립과 상이하게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를 직렬키트로 설치하는 경우 다용도실 천장 점검구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가구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디퓨저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를 위한 환기유니트가 실외기실 천정에 설치되고 급기 및 배기용 디퓨저가 거실 및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기용 덕트호스는 유연성이 있는 재질이며, 시공 시 덕트의 재질 및 모양은 타원, 사각 등 다양한 형태로 변경될 수 있으며 타원, 사각, 휨 등의 여러 형태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청정환기 유상옵선 선택 시 각 실에 급기용 디퓨저는 설치되지 않으며, 배기용 디퓨저의 설치위치는 타입별로 변경됩니다.
- 세대 내 개별보일러가 설치되며, 난방 및 온수공급을 담당하게 됩니다. 개별보일러가 설치되는 벽면과 개별보일러 사이에는 별도의 방진패드가 시공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샤워부스, 욕조하부 제외)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나,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이나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사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연결된 온수배관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가스배관 및 상부장 하부조명의 전선 일부가 노출될 수 있으며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 및 스위치는 제조사, 형태, 색상, 규격,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가구의 마감품질 향상을 위해 가구 마감판의 규격 및 위치, 수납공간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수납공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배기로 인하여 소음, 진동 및 인접세대의 냄새 유입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 현장은 욕실배관이 해당 층 하부에 설치되는 층하배관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추후 상부층 세대 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부층 세대 욕실 내 점검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 마감재 및 점검구 규격,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 발코니 및 일부 싱크대 하부 공간 등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기본형 욕조에 설치되는 에이프런은 점검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며, 에이프런과 욕조사이에는 별도의 코킹마감이 없습니다. 또한, 에이프런과 욕조사이의 간격은 바닥구배의 영향으로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사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은 사양, 규격, 열림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냉매배관은 2개소(거실(스탠드용), 침실1(벽걸이용)) 제공됩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유상옵션 품목으로, 유상옵션 선택 시 해당냉매배관 2개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냉매배관 2개소는 천장형 제품을 위한 배관이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이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기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거실, 침실1 천장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며, 냉매배관 2개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침실2와 침실3에는 별도의 냉매배관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상옵션 미선택 세대의 경우 추후 침실2와 침실3에 별도의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의 설치 부위는 별도의 마감재로 설치될 수 있으며 매립배관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가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되어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 루버는 필히 닫힘구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동파 및 각종 하자는 입주민께서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해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 수전, 배수배관의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이즈는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설치 등)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세대 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설치(건본주택에는 미설치되어 있음)됩니다. 실외기실은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으며, 이로 인해 환기용 장비 및 덕트, 에어컨 배관, 입상배관 및 벽체관통구간 등이 노출되어 미관에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공간 및 벽체사용에 제약이 있으며, 설치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기장비의 사양, 제조사,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기시스템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의 위치 및 크기,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급기 및 배기용 디퓨저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설물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동파 및 각종 하자는 입주민께서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해야 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일부 발코니에만 선풍통 및 배수구가 설치됩니다.
- 저층부 세대(1층)는 저층부 세대의 배수배관 통기를 위한 입상배관이 발코니에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각 동 최하층 세대에는 상부층 세대들의 배수를 위한 입상관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침실1 발코니로 나가는 분합창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건본주택과 달리 세대 배치에 따라 평면의 좌우 방향이 반대로 시공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 및 두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의 위치 및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도기, 수전 및 액세서리류 등)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제공 및 옵션제공품목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은 같은 제품일지라도 등급신청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는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배기용 덕트가 침실2, 침실3 또는 드레스룸의 천정속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되며 설치 위치에 따라 커튼박스 길이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형별로 상이함)

- 각 동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외벽에 노출 설치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코니,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내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마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계량기 설치위치에 따라 가전 상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조기 2단 적재 불가 등)
- 본 공사 시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5항에 의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가스사용량 및 급수, 급탕, 난방사용량은 원격검침을 통하여 방재실로 제공될 예정이며, 검침자료는 도시가스 및 급수 등 공급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84타입의 스마트욕실(욕실1)과 59타입의 부부욕실(욕실2)은 양변기 측면에 양변기급수용 앵글밸브 및 청소용 핸드건이 설치됩니다. 동별 단위세대의 배치방향 및 위치에 따라 양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되며, 위치에 따라 양변기급수용 메탈호스의 길이가 길거나 짧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별 급수용 입상 배관은 각 동 코어별 PD 내 동일한 공용배관으로 공급됩니다. 다만, 실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세대별 공용 또는 단독 입상배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로 공급되는 급수의 압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압력(0.245MPa) 이하로 제공됩니다. 실 사용 시 입주민의 물 사용량, 사용 시간대, 동시사용률 등에 따라 수압이 약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나,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대별 급수 압력은 별도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 배기구 근처(106동, 107동)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 시 가동으로 인한 인근세대로 매연 유입과 소음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 3년간 무상서비스로 제공된 후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 환기, 쿡탑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 (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음)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 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 시 안드로이드 7.0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smarthings/>),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세대내의 각종 홈넷 기기의 제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의 연동은 당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I음성인식 주방TV의 경우 각 세대별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제어 및 음성인식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이와 별개로 주방TV는 홈네트워크(문열림, 세대현관 및 공동현

관 확인 등)와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Wall-Pad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부대시설/공용부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기준 내)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차량진출입 차단기,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주변에 주차장 진·출입램프가 설치되어 인접한 등은 지하주차장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구 주변 및 덮개 등의 형태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과 제연환풍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인근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외부 디자인, 마감재,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상 출입구 및 지하 동출입구의 경우, 주동의 구조 계획에 따라 동별로 출입구 폭, 통로 폭, 진입 동선 길이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단, 경사로 등이 계획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EV홀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1층, 지하층 EV홀에 천정형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여건 상 단지 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 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 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탑 및 옥상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뢰침(측벽포함), 경관조명,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 장비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태양광 설비의 형태 및 수량, 설치위치 등은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및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되며, 가스정압기가 설치 시 향후 가스 정압실의 건축물 및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고, 이로 인해 시각적 간섭 및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공간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의 기계설비를 위한 각종 설비용 배관, 가스배관 및 덕트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가스사용량은 원격검침을 통하여 방재실로 제공될 예정이며, 검침자료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지하PIT층 및 지하주차장에는 각종 집수정이 설치되며, 집수정 내 설치된 펌프의 동작으로 인하여 인접세대 및 인근에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해당 시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 공용부 상부 천정속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 가스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해당 시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 명칭은 특화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과 인접한 동의 경우 각종 기계장비(급배기팬, 실외기 등)의 운전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각 시설(그리너리카페, 그리너리튜디오, 영어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위치 및 면적, 형태는 특화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영어도서관은 입주 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운영 개시 예정이며 운영 개시 후 2년간 사업시행자가 운영 비용을 부담할 예정입니다.(단, 영어도서관 시설에 대한 관리비 및 청소용역비는 공동관리비로 부담). 해당 기간 이후 운영 여부 및 방식은 입주민이 결정하고 운영 비용은 입주민 부담입니다.

### 3. 견본주택 및 홍보물과 관련된 사항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분양 홈페이지 및 사이버 견본주택(VR)은 분양완료 후 운영중지 및 폐쇄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커튼박스 조명 및 커튼, 블라인드류, 침구류, 가구류, 소품류, 디스플레이 패널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전시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59A타입의 다용도실 창호 및 보일러 위치가 일부 변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므로 세대별로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 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에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급/배기 디퓨저, 천장형 제습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천정환기, 보일러, 온도조절기, 환기스위치, 바닥배수구, 입상배관 포함, 점검구, 전기콘센트, 스위치, 세대 분전반, 통신단자함, 발코니수전 등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설치 위치 및 수량이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세대 내 벽지, 천장지 및 타일 등의 내부 마감은 인-허가 조건에 따라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색, 재질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 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 설치품목은 계약내용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인쇄물(분양안내 등) 및 홈페이지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택지지구 개발, 지하철 추진 계획 등) 및 각종 시설(도로, 공원, 녹지, 관공서 이전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사업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인쇄물(분양안내 등) 및 홈페이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계약 전 견본주택 및 사업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인쇄물(분양안내 등) 및 홈페이지는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사업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사업지를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사업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 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 홍보물(분양안내, 홈페이지 등) 상의 마감재 이미지(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 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영상물, 모형물 등 포함)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로고사인 위치, 외벽마감 식재 및 포장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최종 사업계획 내용, 법규 변경, 시공 시 현장여건,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기타

- 본 분양주택의 시공 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건본주택, 단지 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표현의 오류 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 하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 2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 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음)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분양 공동주택 형별 마감사양 등은 형별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제시한 옵션사항 이외 마감사양 등의 유무상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에 사용된 단지명과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과 단지명에 사용된 사업주체 소유의 브랜드는 사업주체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일 : 2029년 03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숙직실, 용역원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작은도서관(그리너리카페)), 다함께돌봄센터, 독서실(그리너리스튜디오), 주민회의실, 경로당(시니어클럽), 어린이집, 키즈스테이션, 멀티룸,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등

■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주요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보증기간                                                                    | 보증금액             | 보증서 번호                  |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br>(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413,574,850,000원 | 제 01212025-101-0003000호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
|--------------------------|--------------------------------------|------|---------------------------------------------------|
| 건축부문설계기준<br>(제7조제2항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
| 기계부문설계기준<br>(제7조제2항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br>(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br>(제7조제2항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외경부면전소부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신청자 : ㈜대우건설
3. 대지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67-8번지 외 2필지
4. 성능등급

가. 소를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경향충격음 차단성능                | ★    |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 4. 공동주택(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
| 5. 차질음 급배수 소음                | ★★★★ |

나. 구조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내구성        | ★    |
| 2. 가법성        | ★★   |
| 3. 수리용이성 전동부분 | ★    |
| 4. 수리용이성 공동부분 | ★    |

다. 환경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기존 대지의 형태학적 가치               | -    |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    |
| 3. 토공사, 철도·도로(철도·도로) 등 개발을 한 면적 | -    |
| 4. 폐수처리 시설                      | -    |
| 5. 에너지 성능                       | ★★★★ |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 설치           | ★    |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    |
| 8. 제습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   |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냉매물질의 사용 금지       | ★★   |
| 10. 환경친화적 제품(ECP)의 사용           | ★★★★ |
| 11. 자립소 자재의 사용                  | ★★★★ |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 |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 |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 |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관시설 설치            | ★★★★ |
| 16. 빗물관리                        | ★★   |
| 17. 빗물 및 우수처리수 이용               | ★★★★ |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 |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주차장 차로의 높이

지하 3층 : 2.3m 이상 (택배차량 진입불가)  
지하 2층 : 2.3m 이상 (택배차량 진입불가)  
지하 1층 : 2.7m 이상 (택배차량 진입가능)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개요                               | 인증 개요                             |
|--------------------------------------|-----------------------------------|
| 건축물명 : 외경부면전소부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 인증번호 : G-SEED-P-2025-0574-9       |
| 건축주 : ㈜대우건설                          |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
| 준공(예정)일 : 2025년 7월 31일               | 유효기간 : 2025. 06. 19 ~ 연차별 갱신      |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67-8번지 외 2필지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일 날짜 |
| 층 수 : 지하 3층, 지상 27층                  |                                   |
| 면적 : 150,932.0027㎡(면적:148,272.4246㎡) |                                   |
| 건축물의 부속 용도 : 공동주택                    |                                   |
| 설계자 : ㈜대우건설건축사사무소                    |                                   |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1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공통) 제4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29호, 환경부 고시 제2023-172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최우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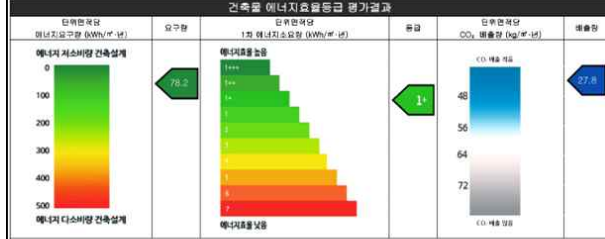
이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개요                           | 인증 개요                   |
|----------------------------------|-------------------------|
| 건축물명 : 외경부면전소부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 인증번호 : 25-주-에-14-0047   |
| 준공(예정)일 : 2025년 7월 31일           | 평가자 : 김태영               |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67-8번지 외 2필지 |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층 수 : 지하3층 / 지상27층               | 인증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
| 연면적 : 153,180.5048㎡              |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
| 건축물의 부속 용도 : 공동주택                |                         |
| 설계자 : (주)대우건설                    |                         |

인증 등급

인증등급 : 1+등급



| 구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
|----|------------------------|------------------------|---------------------------|------------------------------------|
| 냉방 | 0.0                    | 0.0                    | 0.0                       | 0.0                                |
| 난방 | 41.0                   | 81.3                   | 61.6                      | 16.7                               |
| 급탕 | 30.7                   | 37.8                   | 27.9                      | 7.7                                |
| 조명 | 6.5                    | 4.9                    | 13.4                      | 2.3                                |
| 환기 |                        | 2.3                    | 6.3                       | 1.1                                |
| 합계 | 78.2                   | 126.3                  | 109.2                     | 27.8                               |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에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에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또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 )설치면적 [ V ]설치면적(%)건축물임이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값임이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의 2)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지하 3층 : 2.3m 이상 (택배차량 진입불가)<br>지하 2층 : 2.3m 이상 (택배차량 진입불가)<br>지하 1층 : 2.7m 이상 (택배차량 진입가능) | 지하 1층 램프 출입구 : 2.7m 이상<br>그 외 출입구 : 2.3m 이상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 구분   | 건축             |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
|------|----------------|--------------|--------------|------------|
| 회사명  | (주)플랜에이건축사사무소  | (주)선진이엔지     | (주)재원엔지니어링   | (주)재원엔지니어링 |
| 감리금액 | 3,721,784,000원 | 838,660,760원 | 870,573,000원 |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사업주체                     | 시공사 |
|--------|--------------------------|-----|
| 상호     | (주)대우건설                  |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로4가) |     |
| 법인등록번호 | 110111-2137895           |     |

#### ■ 견본주택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11-6

#### ■ 사이버 견본주택

- 주소 : <https://www.prugio.com/hb/2025/park7/>

#### ■ 분양문의

- 1688-023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